

팟캐스트

노후가 행복해지는 습관

행복한 은퇴 발전소

김과장도 박차장도 이부장도 궁금한
연금과 투자, 노후준비의 모든 것
매주 30분 팟캐스트 '행.은.발'에서 들어보세요!



팟캐스트 '행복한 은퇴 발전소'를 만나는 법

안드로이드 폰 : '팟빵' 앱 설치 후 **은퇴** 로 검색

아이폰 : podcast 앱에서 **은퇴** 로 검색

MIRAE ASSET
미래에셋은퇴연구소

SUPPORTED BY
MIRAE ASSET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행복한 은퇴 발전소

2018 Vol. 06

퇴직급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직장인 '최후의 보루' 퇴직급여
꼭 알아야 할 정보 '10문 10답'

특별 인터뷰

백수(白壽) 철학자
김형석 교수의 '행복론'

보험, 묻고 답하다

고관절 골절 의료비
'실손·특약'으로 막아라

명문가 자녀교육

재물은 10년 재산, 지혜는 100년 재산

인기 연재

만화가 홍승우의 '올드'



2018_Vol. 06



당신을 위한 글로벌 팀플레이!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주식거래

11개국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강력한 리서치,
전문가의 컨설팅, 유망종목 선별 리포트까지
미래에셋대우의 글로벌 인프라를 함께 누리십시오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인프라

- 11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 글로벌 리서치센터
- 24시간 계좌개설·해외투자 전용 주문데스크 운영
- 전문가가 운영하는 1:1 맞춤형 글로벌랩 서비스

[미래에셋대우 고객센터 1588 - 6800]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등 외화자산은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거래시 수수료는 온라인 0.25~0.45%, 오프라인 0.50~1.00%(국가별 거래수수료 상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랩어카운트 서비스의 수수료는 홈페이지 및 영업점을 통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랩어카운트의 위탁매매수수료는 없으나,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해당 상품의 약관, 설명서 등에서 정한 보수, 수수료 등의 비용은 고객님의 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는 소식들을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포털에서 **미래에셋은퇴연구소** 를 검색하세요



문의 : (02)3774-6644



행복한 은퇴발전소

2018_Vol. 06



글로벌을 잘 아는 미래에셋대우가 해외주식거래와 글로벌랩도 잘합니다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강력한 글로벌 리서치가 있습니다. 글로벌을 잘 아는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하십시오.

글로벌 주식거래·글로벌 랩어카운트

- 24시간 계좌 개설·해외투자 전용 주문데스크 운영
- 1:1 맞춤형 글로벌 자산관리 랩서비스
- 해외주식 매매차익·랩수익 한도없이 분류과세 적용

Tiffany & Co. Jianguo Hengrui Medicine

Tencent Premier Global 랩어카운트

Amazon Alibaba Goldman Sachs

Apple Google Netflix NVIDIA

Microsoft



Contents

행복한 은퇴발전소

커버스토리

퇴직급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직장인 '최후의 보루' 퇴직급여
꼭 알아야 할 3단계 정보 '10문 10답'

- 08 리딩 칼럼 _ 퇴직급여 이것만은 알아두자
- 10 1단계 _ 퇴직급여 산정
- 16 2단계 _ 일시금 수령 시 세금 계산
- 26 3단계 _ 연금 수령 시 세금 계산

- 33 글로벌 은퇴 이야기 | 치매 잡으러 로봇·지자체 나섰다
미국 인공지능 로봇, 치매 노인교감하며 친구·간병인 역할 척척!
일본 치매 인구 2025년 730만 명 추산, 지자체까지 치매보험 확산
독일 캠핑카 45%를 50대 이상이 소유... 은퇴 후 여행 꿈꾼다
- 42 특별 인터뷰 | 백수(白壽) 철학자 김형석 교수의 '행복론'
- 46 명문가 자녀교육 | 재물은 10년 재산, 지혜는 100년 재산
- 50 보험, 묻고 답하다 | 고관절 골절 의료비 '실손·특약'으로 막아라
- 54 만화가 흥승우의 카툰 '올드' | 시력과 청력 그리고 추리력
- 58 은퇴력 | '갑옷' 벗어야 새로운 출발점에 선다
- 62 인생은 썸씽 | "너 낳고 받은 거니까 너한테 물려줘야지"
- 66 책과 함께 | 예민한 거보다 둔감한 게 더 좋다



[미래에셋대우 고객센터 1588 - 6800]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등 외화자산은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거래시 수수료는 온라인 0.25~0.45%, 오프라인 0.50~1.00%(국가별 거래수수료 상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랩어카운트 서비스의 수수료는 홈페이지 및 영업점을 통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랩어카운트의 위탁매매수수료는 없으나,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해당 상품의 약관, 설명서 등에서 정한 보수, 수수료 등의 비용은 고객님이 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의 어려움이
노후의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미래에셋이 있습니다

수백만 고객께 투자를 통해 수익을 드리는 투자전문그룹
투자를 통해 고객과 사회, 국가에 기여하겠다는 신념은
미래에셋 창업 이래 한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온 분들께 의지가 되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부를 키울 수 있는 좋은 상품을 위해
저희는 다양한 우량자산을 찾고 해외에 진출합니다

저금리를 넘어, 투자를 통해 수익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은행과 다른 투자전문그룹의 방식입니다
좋은 수익과 안정성으로 기여하겠습니다



커버스토리



퇴직급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직장인들에게 퇴직급여는 노후 준비에 있어 최후의 '보루' 같은 존재다. 내 집 장만에 자녀교육비 부담으로 허리가 휠 대로 흰 직장인들에게 마지막 남은 삼짱돈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없는 셈' 치고 사는 이들이 많다. 정작 퇴직금을 받을 때가 돼서야 수령 방법이나 세금 문제로 고민에 빠진다. 그래서 너무 늦다. 제2의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든든한 밑받침이 될 퇴직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세금도 줄이고 현명하게 수령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 퇴직급여의 모든 것을 알아봤다.

■ 집합투자증권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 귀속됩니다. ■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이것만은 알아두자

본인의 퇴직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는 직장인은 드물다. 세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세금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해진다. 2013년과 2016년 두 번에 걸쳐 관련 세법에 큰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는 2020년까지 단계별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알아야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세금도 줄일 수 있다.

클은최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

2018년은 700만 명이 넘는 1차 베이비붐 세대의 허리를 차지하는 1958년 출생자들이 만 60세가 되는 해이다. 그만큼 기업에서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사람이 많다. 또한 명예퇴직이 늘어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퇴직급여에 대한 관심도 높다.

그런데 막상 본인의 퇴직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는 사람이 드물다. 퇴직연금 및 퇴직금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관련 세법이 자주 변경되는 까닭도 있지만, 퇴직이 닥치기 전까지는 퇴직급여 자체에 관심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인이 퇴직할 때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단계를 거

쳐야 한다.

첫째 단계는 세전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단계이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이 과정이 비교적 쉽다. 회사가 근로자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줬던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의 합이 퇴직급여이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스스로 인터넷 등에서 조회할 수 있어 자세한 금액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퇴직금 및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이다. 이들은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이 쉽지 않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월급만 받는

것이 아니다. 상여금도 받고, 연차수당도 받고, 때로는 경영성과금도 받는다. 이런 금액들 중 어느 것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어느 것은 안 들어가는지 따져 봐야 한다. 계속근로기간도 마찬가지로. 일하다 보면 아파서 쉬기도 하고, 육아휴직을 하거나 출산휴가를 가기도 한다. 회사가 합병되거나 경영 악화로 휴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다양한 경우가 계속근로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둬야 한다.

퇴직소득세 2020년까지 단계적 변화

둘째 단계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때 퇴직소득세를 내는데 그 계산 과정이 만만치 않다. 퇴직소득세는 2013년과 2016년 두 번에 걸쳐 크게 변화가 있었다. 주로 고액 퇴직금 수령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이 있었는데 한 번에 계산방식이 바뀐 것이 아니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변화가 진행 중이다. 지금 퇴직하는 사람들의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예전의 방식으로 한 번 구하고, 2016년 세법 개정 후의 방식으로 다시 한 번 구한 후 두 수치를 적절한 가중치를 두고 합산해야 한다.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한 번에 수령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단계까지만 이해하면 본인의 세후 퇴직급여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IRP 혹은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려는 사람들은 연금 수령 시의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복잡했던 것에 비하면 연금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다. 이미 구한 퇴직소득세의 70%만큼 과세되기 때문이다.

퇴직 후 제2의 인생에 밑받침이 되어줄 퇴직급여,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조금 더 확실하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M*

1단계

세전 퇴직급여 산정

- Q1. 퇴직급여, 얼마나 받나요?
☞ 10~11페이지 참조
- Q2. 상여금·성과금은 퇴직급여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 12페이지 참조
- Q3. 회사 임원인 경우 퇴직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 13페이지 참조
- Q4. 육아휴직을 했다면 퇴직급여가 줄어드나요?
☞ 14페이지 참조

2단계

일시금 수령 시 세금 계산

- Q5. 퇴직급여, 한꺼번에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 16~21페이지 참조
- Q6. 중간정산 뒤 몇 년 후 명예퇴직을 했더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22~23페이지 참조
- Q7. 중간정산·중도인출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24페이지 참조

3단계

연금 수령 시 세금 계산

- Q8. 퇴직급여 수령한 것을 IRP에 넣을까? 연금저축에 맡길까?
☞ 26~28페이지 참조
- Q9. 퇴직급여,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 29페이지 참조
- Q10. 연금 수령 한도가 뭐죠? 한도를 넘겨서 인출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 30~31페이지 참조



1단계

퇴직급여 산정

Q 1

퇴직급여, 얼마나 받나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받는다. 반면 퇴직금 및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받는다.

글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

A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넣어줬던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의 합이다. 근로자 본인의 퇴직연금계좌에서 직접 운용했기 때문에 그 규모를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반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받는다. 제도 유형별 퇴직급여 산출 방법을 요약해보면 <표 1>과 같다.

퇴직금 및 DB형 퇴직연금 제도에서의 퇴직급여 산출은 수식 자체만 보면 간단하다. 문제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눠 구한다. 즉 하루 치 임금 총액인 셈이다.

그렇다면 30일 치의 평균임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월급과 같을까? 그렇지 않다. 평균임금은 월급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일반적인 월급은 주로 기본급을 말한다. 이 기본

<표 1> 제도 유형별 퇴직급여 산출 방법

구 분	퇴직급여 산출 방법
퇴직금 및 DB형 퇴직연금	퇴직급여 =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DC형 퇴직연금	퇴직급여 = 매년 회사가 납입해준 부담금 합 + 운용수익

<표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기본급	통상임금	평균임금
직급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면허수당, 벽지근무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등 고정적·정기적·일률적 금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당직수당, 명절수당 등		

급에 직급수당, 직무수당 등 정기적으로 나오는 급여를 포함해 '통상임금'이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정의한다. 한마디로 평소에 받는 노동의 대가가 통상임금인 셈이다.

이보다 더 확장된 개념인 '평균임금'에는 통상임금의 모든 항목들에 더해져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등이 포함된다. 사용자로부터 받는 거의 모든 금품이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쉽다(표 2 참조).

일 시작한 날부터 근속연수 시작

그러므로 퇴직금이나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를 산출할 때는 월급 외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있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30년간 근무하다가 지난해 말 퇴직한 김철수 씨는 마지막 해에 매달 4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 또한 퇴직 직전 1년 동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합쳐서 총 900만 원을 받았다. 김 씨가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퇴직급여로 얼마를 받았을까?

김 씨의 3개월간 월급 합은 1200만 원이다. 또한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3개월분으로 환산하면 225만 원(900만 원×3개월/12개월)이 된다. 합은 1425만 원이다. 이 돈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인 92일로 나눠 하루 평균임금을 구하면 15만4891원이 나온다. 따라서 김 씨는 퇴직급여로 1억 3940만 원(15만4891원×30일×30년)을 받을 수 있다.

근속연수도 그리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퇴직금 및 DB형 퇴직연금을 구할 때 쓰는 근속연수는 근로기준법상의 '계속근로기간'과 같은 의미이며,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근로계산 종료 시까지의 기간, 즉 근로계약의 존속 기간을 말한다.

그런데 근로계약만 체결하고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어떨까. 이때는 계속근로기간이 시작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보다 더 먼저 근로를 제공했다면 실제 근로를 시작한 시점이 계속근로기간의 시작점이 된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경우는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이 있었을 때다. 이때는 중간정산 받은 다음 날부터 새로운 계속근로기간이 시작된다.

계속근로기간의 종료일은 근로계약 관계가 끝난 날이 된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됐거나, 사직 내지 퇴직했거나, 해고된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정년퇴직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일을 정했다면 그날이 종료일이 되고,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판례상 정년에 도달한 날을 퇴직일자로 본다. **M**

Q2

상여금·성과금은 퇴직급여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 평균임금 및 임금총액에 포함되지만, 비정기적이고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영성과금은 그렇지 않다. 또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경영성과금을 퇴직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다.

글 **이행**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원



A 상여금과 성과금이 퇴직급여에 미치는 영향은 근로자가 가입한 퇴직급여 제도와 상여금·성과금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먼저 살펴볼 것은 지급 조건이나 시기 및 금액 등이 급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기재돼 있는 정기적 급여 형태의 상여금이다. 이러한 유형의 상여금은 퇴직금 제도나 DB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보자. 직장에서 30년간 근무한 박성과 씨는 퇴직 마지막 해에 매월 400만 원의 임금을 받았고, 연간 총 500만 원의 상여금을 받았다. 해당 상여금은 노사 단체협약에서 지급 시기와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 회사는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경우 박 씨의 평균임금은 14만4022원이고, 퇴직급여로 1억2962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표 참조).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정기적인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DC형 퇴직연금을 운영 중인 회사는 근로자의 퇴

직연금계좌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해야 하는데, 이때 정기적인 상여금은 연간 임금 총액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

정기적인 상여금과는 별도로 지급 시기나 금액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성과금도 있다. 그 해 경영 실적에 따라 대표이사의 재량으로 지급하는 경영성과금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비정기적인 성과금은 퇴직금 제도나 DB형 퇴직연금 제도에서의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DC형 퇴직연금 회사 납입 금액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 총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경영성과금 퇴직연금 납입률 노사 합의 사항

하지만 경영성과금도 DC형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원한다면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나중에 이 금액을 수령할 때 근로소득세 대신 퇴직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사업장 퇴직연금 규약에 경영성과금 납입을 노사 간 합의로 명시해야 하고,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모두에게 회사 규약에 정해진 비율대로 경영성과금을 적립해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계좌에 경영성과금 납입을 원치 않는 근로자는 이 제도의 최초 적용 시 혹은 경영성과금 납입 비율 변경 시에 제도 적용을 거절할 수 있다. **M**

<표> 박성과 씨의 퇴직급여 산출 방법

$$\text{평균임금} = \frac{3\text{개월간 월급}(1200\text{만 원}) + 3\text{개월 환산 상여금}(500\text{만 원} \times 3/12)}{14\text{만}4022\text{원}} = \frac{\text{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92\text{일})}{14\text{만}4022\text{원}}$$

퇴직급여(1억2962만 원) = 평균임금(14만4022원) × 30일 × 30년

Q3

회사 임원인 경우 퇴직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원의 경우 일반 직원과 퇴직급여 계산 방식이 다르다. 2012년 이후 발생한 퇴직소득이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 과세도 근로소득세가 적용되므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글 **오현민**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



A 회사의 임원은 기본적으로 임시직이며, 임기는 대부분 3년 내외다. 보수 역시 연봉으로 책정해 지급하는데 이 연봉 안에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 퇴직급여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회사가 임원에게 반드시 퇴직급여를 챙겨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임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그렇다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얼마를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법이 아니라 각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다. 다만 정부에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는 한도는 존재한다. 이 한도는 소득세법에 따라 <표>와 같이 계산한다. 2012년 이후 발생한 퇴직소득이 이 한도를 넘어서면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한다. 반면 2011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퇴직소득으로 인정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2009년 11월 1일 회사 임원으로 취임한 김대표 씨는 2018년 6월 30일에 퇴직했다. 직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은 2억 원이다. 2012년 1월 1일에 신설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김 씨의 퇴직금은 6억 원이다. 김 씨의 총 근속연수는 104개월이

<표>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식

$$\frac{\text{퇴직 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10} \times \frac{\text{2012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개월)}}{12} \times 3$$

며,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속연수는 78개월이다. 따라서 한도가 적용되는 퇴직급여, 즉 2012년 이후 발생한 퇴직급여는 4억5000만 원(6억 원 × 78개월 / 104개월)이다. 반면 김 씨의 퇴직소득 한도는 3억9000만 원((2억 원 / 10) × (78개월 / 12) × 3)이다. 둘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6000만 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김 씨는 퇴직급여 6억 원 중 5억4000만 원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고, 초과금 6000만 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M**

임원 퇴직급여, 이것은 주의하자

임원의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회사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다. 만약 존재한다면 본문에서 설명한 것처럼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회사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했다면 본문의 <표>에 의해 계산된 한도의 3분의 1만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유념해야 한다. 2012년 이전부터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었다면 2011년까지의 퇴직금 산출하는 방법에 한 가지 옵션이 추가된다. 근속기간에 비례한 퇴직금과 2011년 말 퇴직을 가정한 퇴직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Q 4

육아휴직을 했다면 퇴직급여가 줄어드나요?

육아휴직, 출산휴가,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등 법에서 보장된 휴가 또는 휴직은 퇴직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족 돌봄 휴직,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따른 휴업 등의 기간도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봐서 퇴직급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글 오은미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

A 올해 둘째를 출산한 조은정 씨. 첫째는 친정 엄마의 도움을 받아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었지만, 둘째야 할 아이가 돌이 되니 업무가 나질 않는다. 불가피하게 육아휴직을 고려하게 된 조 씨. 육아휴직의 장단점들을 따져보는 와중에 퇴직급여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졌다.

육아휴직을 하는 1년간은 근무를 하지 못할 텐데 퇴직급여도 이 기간을 빼고 주는 건 아닌지,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는 회사가 지급해온 통상임금의 40%(상한 월 100만 원, 단 시작부터 3개월까지는 80%) 정도만 준다고 하는데, 퇴직급여를 산출할 때 손해를 보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육아휴직은 퇴직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퇴직금이나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해 퇴직급여를 산출하는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유산휴가 등 법령에 규정된 휴가 또는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가 통상임금에 비해 적더라도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휴직 기간이 제외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매년 근로자 임금 총액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회사가 부담금으로 입금해주는 DC형 퇴직연금의 경우도 부담금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정상적으로 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드는

일은 없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실제로 일한 기간이나 출근한 기간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산입 범위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M*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휴가·휴직, 어떤 것이 있나?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비롯해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주휴일 등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 또는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또한 개인이 사고나 질병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회사를 나가지 못한 기간과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도 마찬가지다. 개인적 사유로 구속되거나 무단결근한 경우라도 해고되기 전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만큼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간다.

회사 상황이나 업무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경우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된다. 여기에는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회사가 휴업을 한 기간,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따른 산재요양 기간 등이 포함된다. 근로자가 대기 발령이나 징계 처분, 전보나 전직과 같은 기업 내 인사이동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었던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본다.

연금과 투자,
노후 대비 정보 어디가 좋을까요?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팟캐스트·페이스북·뉴스레터



01

팟캐스트 ‘행복한 은퇴 발전소’

‘팟빵/podcast’ 앱 접속 → ‘은퇴’ 검색 → ‘행복한 은퇴 발전소’ 구독



02

Facebook ‘미래에셋은퇴연구소’

‘Facebook’ 웹 / 앱 접속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검색 → 페이지의 ‘좋아요’ 클릭

03

뉴스레터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검색 → ‘뉴스레터 신청’ 클릭 → 이메일주소 등록



2단계

일시금 수령 시 세금 계산



Q 5 퇴직급여 한꺼번에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한다. 퇴직소득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시에 받고자 하면,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한다. 이때 손에 쥘 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으면, 자연스럽게 세금을 제대로 계산한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 도대체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산출하고, 얼마나 내야 하는 걸까? 단계별로 나눠 꼼꼼하게 살펴보자.

글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A 퇴직소득세에 대해 알려면 과세 대상부터 살펴야 한다.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은 소득의 원천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법정퇴직금이 있다. 1주간 평균 근무시간

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데, 이를 법정퇴직금이라 한다. 법정퇴직금은 당연히 퇴직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둘째, 명예퇴직금이 있다. 회사가 정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에 더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셋째, 최근 들어 경영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이체하고 퇴직할 때 수령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2012년 이전에 근로자가 DC계좌에 추가 납입해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또한 퇴직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퇴직소득세 산출의 3가지 특징

지금까지 과세 대상 소득을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을 살펴보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퇴직소득의 성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입사한 다음

부터 퇴직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다. 이 같은 특성을 무시하고 퇴직소득을 퇴직하는 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하면, 그해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해 과세한다.

하지만 퇴직소득을 따로 분류해 과세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 직장에서 장기간 일하면 퇴직금 규모도 커지기 마련인데, 여기에 바로 누진세율(6~42%)을 적용하면 장기근속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연분연승이라는 별도의 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먼저 '연분'이란 퇴직금을 근속기간으로 나눈다는

뜻이다. 이렇게 근속기간으로 안분(按分)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여기에 다시 근속기간을 곱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구하는 것이 '연승'이다.

마지막으로 퇴직소득은 노후생활비 재원이다. 그래서 각종 공제 혜택이 있다. 대표적으로 퇴직금의 40%를 공제해주는 정률공제가 있다. 최근에는 정률공제를 대신하기 위한 환산급여공제를 두고 있다. 이 밖에 장기근속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속연수공제도 두고 있다.

1단계 '중전 방식'에 따른 퇴직소득세 산출

연분연승 방식과 각종 공제 혜택을 적용하다 보니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에 비해 세 부담이 가볍다. 그러자 고소득 근로자는 퇴직금도 고액을 수령하면서 세금까지 너무 적게 낸다는 비판에 부딪히게 됐다. 그래서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13년과 2016년에 두 차례 세법 개정이 이뤄졌다.

2013년 세제 개편이 연분연승 방법을 강화해 퇴직소득세 부담을 늘렸다면, 2016년에는 정률공제를 폐지하고 연분연승 방법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고액 퇴직금 수령자의 세 부담을 대폭 늘렸다.

다만 갑작스레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개정 방식'에 따른 퇴직소득세 산출 방법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면 '중전 방식'에 따른 퇴직소득세 산출 방법부터 살펴보자.

①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구한다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려면 퇴직소득 과세표준부터 산출해야 한다. 과세표준이란 세액 계산의 기준

이 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된다. 퇴직소득에서 정률공제와 근속연수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된다. 정률공제가 퇴직소득의 40%를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것이라면, 근속연수공제는 근속기간에 비례해 퇴직소득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김미래(57세) 씨는 1989년 1월 1일에 입사한 회사에서 30년간 일하고 2018년 12월 31일에 퇴직할 예정이다. 아직 정년까지는 3년이나 남았지만, 올해 말에 퇴직하면 법정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퇴직금으로 1억2000만 원이나 받을 수 있어 퇴직하기로 결심했다. 김미래 씨는 과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적은 없고, 연말에 퇴직하면 법정퇴직금으로 1억800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김 씨의 퇴직소득은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더한 3억 원이다. 이 중 40%를 정률공제로 제하고 나면 1억8000만 원이 남는다. 그리고 한 회사에서 30년간 근속했으므로 근속연수공제로 2400만 원(21페이지 참조)을 공제하면, 김 씨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1억5600만 원이 된다.

김미래 씨의 퇴직소득 과세표준

	법정퇴직금	1억8000만 원
+	명예퇴직금	1억2000만 원
=	퇴직소득	3억 원
-	정률공제 (40%)	1억2000만 원
-	근속연수공제	2400만 원
=	퇴직소득 과세표준	1억5600만 원

② 2012년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산출한다

다음은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2012년 이전 것과 2013년 이후 것으로 안분한다. 왜냐하면 2013년에

퇴직소득세 강화를 위해 관련 세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됐다고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근속기간으로 안분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다. 김 씨의 경우 총 근속기간이 30년인데, 이 중 2012년 이전 근무기간은 24년이다.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안분하면, 2012년 이전 과세표준은 1억2480만 원(1억5600만 원×24년/30년)이 된다.

그러면 2012년 이전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해보자. 보통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산출하지만,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앞에서 설명한 '연분연승'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분연승' 방법으로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면 누진세율을 적용해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연분'을 위해 김 씨의 2012년 이전 과세표준 1억2480만 원을 2012년까지의 근속연수인 24년으로 나눠보자. 계산해보면 520만 원이 된다.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데, 520만 원이면 세율 구간은 6%이다. 마지막으로 '연승'을 위해 세액에 다시 근속연수인 24년을 곱해보면 산출세액은 749만 원이 된다(표 2-㉔ 참조).

③ 2013년 이후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한다

이번에는 2013년 이후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차례다. 2012년 이전과 비교해 연분연승을 하는 방법이 달라졌다. 퇴직소득세를 강화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다음 5를 곱한다. 그런 다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과세표준을 5배로 환산한 만큼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세액을 5로 나누고, 여기에 근속연수를 곱해 세금을 산출한다.

이 같은 방법을 적용해 김 씨의 2013년 이후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해보자. 김 씨의 2013년 이후 근속기간은 6년이므로, 여기 맞춰 과세표준을 안분하면 3120만 원(1억5600만 원×6년/30년)이다. 과세표준을 5배로 환산하고 이를 근속연수(6년)로 나누면 2600만 원이 된다.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면 282만 원이 나온다. 이 금액을 다시 환산배수(5)로 나누고 여기에 근속연수(6년)를 곱하면 338만 원이 된다(표 2-㉕ 참조).

④ 최종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2012년 이전 산출세액과 2013년 이후 산출세액을 더하면 최종 산출세액이 된다. 김 씨의 경우 이 둘을 더하면 1087만 원이다.

〈표 2〉 중전 방식으로 계산한 김미래 씨의 퇴직소득세

	㉔ 2012년 이전	㉕ 2013년 이후
기간별 과세표준	1억2480만 원	3120만 원
÷ 근속연수(연분)	24년	6년
× 환산배수	-	5배
=	520만 원	2600만 원
× 기본세율	(6%)	(6~15%)
÷ 환산배수	-	5배
× 근속연수(연승)	24년	6년
=	산출세액 749만 원	338만 원
최종 산출세액(㉔+㉕)		1087만 원

2단계 '개정 방식'에 따른 퇴직소득세 산출

2013년에 이어 2016년에 퇴직소득세법이 개정됐다. 2016년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정률공제를 폐지하고 환산급여공제를 신설한 것이다. 그리고 연분연승을 할 때 환산배수를 5배에서 12배로 확대한 것도 주요한 변화 중 하나다.

〈표 3〉 개정 방식으로 계산한 김미래 씨의 퇴직소득세

	퇴직소득	3억 원
-	근속연수공제	2400만 원
=		2억7600만 원
÷	근속연수	30년
×	환산배수	12배
=	환산급여	1억1040만 원
-	환산급여공제	6638만 원
=	과세표준	4402만 원
×	기본세율	(6~15%)
÷	환산배수	12배
×	근속연수	30년
=	최종 산출세액	1380만 원

그러면 2016년 이후 '개정 방식'에 따라 김미래 씨의 퇴직소득세를 계산해보자.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려면 먼저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한다.

먼저 퇴직소득 3억 원에서 근속연수공제로 2400만 원을 제하고 나면 2억7600만 원이 된다. 이 금액을 근속연수(30년)로 나누고 12를 곱하면 1억1040만 원이 되는데, 이를 환산급여라고 한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이 된다.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의 크기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김 씨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6638만 원이므로 과세표준은 4402만 원이 된다.

이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구할 차례다. 김 씨의 과세표준이 4402만 원이므로 15% 세율 구간에 해당된다. 산출된 세액을 환산배수(12배)로 나누고 근속연수(30년)를 곱하면 138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이 최종 산출세액이다(표 3 참조).

3단계 '종전 방식'과 '개정 방식' 간의 적용 비율 반영

마지막으로 퇴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따라 '종전 방식'과 '개정 방식'을 적용할 비율을 정한다. '개정 방식' 적용 비율은 2016년 20%에서 시작해서 매년 20%포인트씩 증가해 2020년이면 100%가 적용된다.

2018년에 퇴직하는 김 씨는 '종전 방식'에 따른 세액에 40%를, '개정 방식'에 따른 세액에 60%를 적용해 합산해야 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김 씨가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는 1263만 원이 된다. 또한 퇴직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김 씨는 퇴직소득 3억 원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하고 남은 2억861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M*

근로자 추가납입금에 대한 과세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DC, IRP)에 추가로 적립하면 연말 정산 때 연간 최대 70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보통은 IRP계좌를 별도로 개설해 추가로 적립하지만, DC계좌에 추가 적립하기도 한다. 이때 DC계좌에 추가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은 퇴직할 때 일시에 수령할 수 있는데, 납입 시기와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다르다. 먼저 저축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을 찾아 쓸 때는 납입 시기와 무관하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액공제받은 저축금액과 운용수익은 납입 시기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종류가 달라진다. 먼저 2013년 이후에 저축한 원금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2012년 이전에 저축한 원금과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근로자 추가납입금을 퇴직할 때 일시 수령했을 때 과세

구분	2012년 이전 납입분		2013년 이후 납입분	
	원금	운용수익	원금	운용수익
세액공제 (O)	퇴직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기타소득
세액공제 (X)	비과세	퇴직소득	비과세	기타소득

종전 방식

정률공제

퇴직소득의 40%를 공제한다.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 안분

-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근속기간으로 안분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한다.

• 2012년 이전 퇴직소득 과세표준

$$\text{퇴직소득 과세표준} \times \frac{\text{2012. 12. 31. 이전 근속기간}}{\text{근속기간}}$$

• 2013년 이후 퇴직소득 과세표준

$$\text{퇴직소득 과세표준} \times \frac{\text{2013. 1. 1. 이후 근속기간}}{\text{근속기간}}$$

개정 방식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에 따라 아래의 공제금액을 빼고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환산급여	공제금액
800만 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800만 원 + 800만 원 초과분의 60%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4520만 원 + 7000만 원 초과분의 55%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6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	1억517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35%

공통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에 따라 아래 금액을 퇴직소득에서 공제한다.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 원 × 근속연수
10년 이하	150만 원 + 50만 원 × (근속연수 - 5)
20년 이하	400만 원 + 8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	1200만 원 + 120만 원 × (근속연수 - 20)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 4600만 원	15%	108만 원
4600만 원 ~ 8800만 원	24%	522만 원
8800만 원 ~ 1억5000만 원	35%	1490만 원
1억5000만 원 ~ 3억 원	38%	1940만 원
3억 원 ~ 5억 원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3540만 원

종전 방식과 개정 방식 적용 비율

-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따라 아래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속연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종전 방식	80%	60%	40%	20%	0%
개정 방식	20%	40%	60%	80%	100%

종전 방식



개정 방식



6

중간정산 뒤 몇 년 후 명예퇴직을 했더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간정산 이후 퇴직을 하면 그 이후 근무기간과 퇴직금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그런데 명예퇴직금 등을 받으면 짧은 기간 동안 큰 퇴직소득이 발생해 세금이 많아진다. 이럴 때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글 김동엽 미래셋은퇴연구소 상무



A 김희철(55세) 씨는 올해 말에 희망퇴직을 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면 정년까지는 아직 5년 더 일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지금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나아 보였다. 이런 결심을 한 것은 명예퇴직금 때문이다. 김 씨는 5년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 내집 마련 자금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올해 연말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법정 퇴직금은 4000만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명예퇴직금으로 3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돈이면 주택담보대출도 갚고, 일부는 퇴직한 다음 사업 밑천으로 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중간정산 다음 날부터 근속연수 계산

그런데 예상치 않은 문제가 생겼다. 예상 퇴직소득세를 계산해보니 7000만 원이나 된다는 것 아닌가. 정말 퇴직소득의 20%에 해당하는 거금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걸까? 남들은 세금이라고 해봐야 퇴직소득의 5% 정도를 납부하거나, 많아도 10%를 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유독 김 씨만 퇴직소득세를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는 걸까? 혹시 세 부담을 덜 수 없는 방법은 없을까?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인 데다 노후생활비 재원으로 사용된다. 퇴직소득의 이런

특성을 감안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세 부담을 덜어준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공제와 같은 공제 혜택을 통해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낮춘다거나, 연분연승 방법을 동원해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근속기간에 안분함으로써 낮은 세율이 적용되게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근속연수공제가 됐든, 연분연승 방법이 됐든 근속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하다. 그런데 중간정산을 하면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문제가 생긴다. 김 씨의 퇴직소득세 부담이 커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통상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 근속기간은 입사부터 퇴직할 때까지 기간을 말한다. 하지만 김 씨처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력이 있으면, 중간정산한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기간으로 본다.

<표 1> 김희철 씨 퇴직소득 관련 자료

이번 퇴직금 관련 자료(DB형 퇴직연금 가입)

- 입사일 : 1991년 1월 1일
- 퇴직일 : 2018년 12월 31일
- 법정퇴직금 : 4000만 원
- 명예퇴직금 : 3억 원

과거 중간정산 당시 퇴직소득 관련 자료

- 중간정산일 : 2013년 12월 31일
- 중간정산 퇴직급여 : 1억6000만 원
- 퇴직소득세 : 492만 원, 지방소득세 : 49만 원

<표 1>은 김 씨의 퇴직소득 관련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퇴직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해보자. 김 씨의 퇴직소득은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쳐 3억4000만 원이다. 그리고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은 5년이다. 이를 기초로 산출한 김 씨의 퇴직소득세는 6480만 원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7128만 원이나 된다. 퇴직소득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셈이다. 세 부담이 이렇게 큰 것은 3억40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중간정산 이후 5년 동안 벌어들였다고 보고 퇴직소득세를 산출했기 때문이다.

정산 특례 활용하면 퇴직금 절세 가능

중간정산 때문에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중간정산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과거로 시간을 되돌릴 순 없을까? 타임머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이용하면 중간정산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서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다.

퇴직소득 정산 특례란 과거 중간정산한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다. 퇴직자가 과거 중간정산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서 정산 요청을 하면, 회사는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고 원천 징수해야 한다.

정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을 산출한다. 그리고 중간정산 이전에 일한 기간과 이후에 일한 기간을 합쳐 근속연수를 새로 산출한다. 그런 다음 새로 산출한 퇴직소득과 근속연수를 적용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새로 산출한 금

액에서 중간정산 때 납부한 세금을 빼고 남은 금액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한다.

그러면 김 씨가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신청했을 때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자. 먼저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치면 퇴직소득은 5억 원이 된다. 그리고 중간정산 이전(23년)과 이후(5년)를 합치면 근속기간은 28년이다. 이를 기초로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산출하면 합산 퇴직소득세가 3815만 원(퇴직소득세 3468만 원+지방소득세 346만 원)이 된다. 여기서 과거 중간정산 때 납부한 세금(541만 원)을 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3274만 원이다. 앞서 정산 특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세금이 7128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세 효과가 3854만 원이나 된다(표 2 참조).

<표 2> 정산 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

정산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정산 특례를 적용했을 때	
법정퇴직금	4000만 원	명예퇴직금	3억 원
명예퇴직금	3억 원	법정퇴직금	4000만 원
		중간정산 퇴직금	1억6000만 원
퇴직소득	3억4000만 원	퇴직소득	5억 원
근속연수	5년	근속연수	28년
산출세액	7128만 원	산출세액	3815만 원
기 납부세액		기 납부세액	541만 원
납부세액	7128만 원	납부세액	3274만 원

3854만 원 절세

따라서 김 씨처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거나,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한 다음 얼마 되지 않아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활용해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종업원이 임원이 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했거나,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과 같은 조직 변경이나 계열사 진출 등을 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이용할 수 있다. **M**

Q7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제외한 퇴직금,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중간정산 혹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글 박영호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연구센터장

A 퇴직연금이 아닌 기존 퇴직금 제도에 가입돼 있는 경우 주택 구입이나 요양과 같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근퇴법)'에 규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이때 중간정산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중간정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한해 근퇴법상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이때 이 금액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DC형으로 전환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근퇴법상의 중도인출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전세·임차보증금 부담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피해 등이 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는 여기에 임금피크제 실시 후 임금 감소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감소가 추가된다.

DC형 가입자뿐만 아니라 IRP계좌에 이체한 퇴직금이나 적립금도 위의 사유에 해당되면 중도인출할 수 있다. 이때 근퇴법에 따라 중도인출하거나, 아니면 아예 IRP를 해지할 때에 '소득세법상 부득이

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소득세법에서는 부득이하게 IRP 적립금을 인출 또는 해지하는 경우는 '연금소득'으로 인정해주는 혜택이 있다.

소득세법상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는 △사망 △해외 이주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연금액과 취급자의 영업 정지, 인허가 취소, 파산 선고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피해 등이 해당된다.

'전세·임차보증금' 위해 퇴직금 중도인출 가능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게 돼 30%는 감면된다. 반면,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DC형 퇴직연금이나 IRP의 경우 퇴직급여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해 소득·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이 있을 수 있다. 소득 원천에 상관없이 그동안 운용해서 얻은 수익도 존재한다. 이 금액을 중도인출하면 퇴직급여와는 과세체계가 다르게 적용된다.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돼 연금소득세를 내는 경우 3.3~5.5%의 세율로 과세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의 인출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M*



평안한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5원칙

저성장·저금리·고령화로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은퇴자산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 다른 은퇴자산 관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 01 은퇴자산은 글로벌로 분산투자해야 합니다**
 저성장·고령화로 인해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경우 기대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은퇴자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글로벌 분산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02 은퇴자산은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손실은 장기투자라도 회복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은퇴자산을 '자산군 간, 자산군 내, 지역별' 이렇게 3중으로 철저하게 분산해야 합니다.
- 03 은퇴자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은퇴자산은 장기간 운용해야 하므로 사회·경제적 트렌드의 변화에 맞는 우량자산을 선별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 04 은퇴자산은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질병 및 사고는 은퇴자산의 형성을 막고 소진을 앞당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보장성 보험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 05 은퇴자산은 적립에서 인출까지 통합적 관점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길어진 수명과 낮은 금리는 은퇴자산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요구합니다. 자산규모보다는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관점을 가져야 하며, 자신에게 맞는 인출계획을 세우고 적립시기부터 그에 맞게 은퇴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3단계

연금 수령 시 세금 계산



Q 8 퇴직급여 수령한 것을 IRP에 넣을까? 연금저축에 맡길까?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려면 IRP 혹은 연금저축을 활용해야 한다. 자금 운용 제한이나 퇴직급여 인출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보고, 본인의 성향이나 향후 자금계획에 좀 더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또한 IRP와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춘 이후라면 불이익 없이 서로 계좌 이전이 가능하다.

글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

A 퇴직급여는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퇴직금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다. 우선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직 시 법정퇴직금 전액이 IRP로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55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현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현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렇게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한 번에 받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연금으로 받고 싶어진다면 퇴직급여 수령 후 60일 이내에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재입금할 수 있다. 이때 냈던 퇴직소득세는 환급받는다. 이 과정에서 받은 퇴직급여 중

일부만 입금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퇴직소득세도 해당 비율만큼 돌려받는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IRP·연금저축으로 받거나 혹은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뒤 현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이때도 근로자가 연금으로 받고 싶다면 퇴직급여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다시 IRP나 연금저축에 납입하고 냈던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으면 된다. 명예퇴직금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 여부나 나이와 상관없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명예퇴직금 역시 법정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으며, 연금계좌로의 이전 절차나 퇴직소득세 환급 방법 등은 법정퇴직금과 동일하다.

IRP와 연금저축, 운용·인출 규제에 차이

연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면 IRP와 연금저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IRP와 연금저축은 몇 가지 차이가 있다. 먼저 자산관리 측면이다. IRP 계좌에서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이

70%로 제한돼 있다. 반면 연금저축은 이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100%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다. 물론 연금 수령 시기에는 안정적인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있어서 본격적인 연금 수령을 몇 년 뒤로 늦추려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다.

운용 단계에서 보면 퇴직급여 인출 규제 방식도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필요할 경우 일부만 찾아 쓸 수 있다. 하지만 IRP 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부분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이 일부만 필요한 경우에도 전액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

다만 실제 연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는 IRP의 이런 단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비정기 연금’을 활용하면 된다. 일반적인 연금은 특정 기간 동안 특정 금액을 수령하게 되지만, 비정기 연금은 수시로 필요한 만큼 찾아 쓸 수 있다. 그러므로 갑작스러운 목돈 수

퇴직급여 수령과 연금계좌 이전 절차



요에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그러나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은 연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IRP와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상의 차이는 없다. 따라서 위의 몇 가지 차이점을 살펴보고 본인의 취향이나 앞으로의 자금계획에 적합한 상품을 고르면 된다.

55세 이후 IRP와 연금저축 간 계좌 이체 가능

만약 어떤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연금저축이 더 좋아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는 여러 연금저축 및 IRP계좌들에 흩어져 있는 연금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서 연금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는 IRP와 연금저축 간 계좌 이체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예전에는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혹은 연금저축에서 IRP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2016년 6월 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IRP와 연금저축 간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됐으며,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도 않는다.

IRP와 연금저축 간 계좌 이체는 가입자의 연령이 55세 이후이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계좌를 전액 이체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다만 퇴직소득이 있을 경우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이체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DC형 퇴직연금으로 납입한 자기부담금이 있는 연금계좌는 계좌 이체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또한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좌를 그 이전에 개설한 연금계좌로 계좌 이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체를 하려면 가입자는 먼저 이체받을 금융회사(신규 가입 회사)에서 IRP 또는 연금저축계좌를 준비해야 한다. 사용하던 계좌가 있다면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새로 개설해야 한다. 그 이후 이체 전 금융회사(기존 가입 회사)에서 계좌 이체 신청서 및 계좌 이체 시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하면 절차가 완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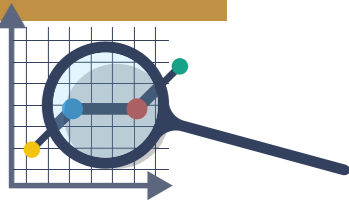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 가입일, 연금 개시일, 연금 수령 연차, 연금 수령 한도 등의 연금 수령 조건은 이체받는 연금계좌 기준으로 설정된다. 다만 이체받는 연금계좌가 신규로 개설한 계좌일 경우에는 이체 전 계좌 기준으로 연금 수령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M**



퇴직급여,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 시점에 계산한 퇴직소득세의 70%만큼 과세된다.

글 윤치선 미래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



A 얼마 전 직장에서 퇴직한 박연금(60세) 씨는 퇴직급여로 1억 원을 받으면서 1000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했다. 박 씨는 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이라, 다시 IRP 혹은 연금저축에 이체해서 10년 동안 연 1000만 원의 연금을 받기로 했다. 박 씨가 매년 연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일까?

연금, 세금 적고 할부도 가능

퇴직급여를 IRP나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는 대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연금소득세는 퇴직 시점에 계산한 퇴직소득세의 70%만큼 과세된다.

따라서 박 씨가 매년 내야 하는 연금소득세는 70만 원(1000만 원/10년×70%)이며, 연금 수령기간 10

년 동안 내야 하는 세금의 합은 700만 원이다. 퇴직급여를 한 번에 현금으로 받았을 때 내야 하는 세금 1000만 원과 비교하면 300만 원이 절감되는 셈이다.

세금을 연금 수령기간 동안 나눠서 내는 것도 장점이다. 내야 하는 돈은 가능한 한 천천히 내는 편이 좋다. 과세가 이연된 동안 해당 자금을 운용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생각해보자. 연금소득세 700만 원 중 첫째에 납부하는 70만 원을 뺀 630만 원을 연금계좌 안에서 2%로 운용했다고 가정해보자. 1년만 운용해도 12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퇴직급여에 대한 연금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어서 (근로자가 연금저축·퇴직연금에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수익은 연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연금액이 많아도 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M**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의 연금계좌 재입금 시 퇴직소득세 환급 절차

명예퇴직금, 55세 이상의 퇴직연금 가입자가 수령한 퇴직급여, 퇴직연금 미가입자가 받은 퇴직금은 현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렇게 현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다시 연금계좌에 입금하려면 일단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영수증을 가지고 IRP 혹은 연금저축을 개설할 금융기관을 방문해 계좌를 만들고 퇴직급여를 이체하면 된다.

이 절차가 끝나면 금융기관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만들어 퇴직한 회사로 송부한다. 이 신고서는 쉽게 말하면 퇴직급여가 연금계좌에 입금됐으니 퇴직한 회사에서 원천 징수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달라는 문서이다. 이후 회사는 퇴직급여 입금 비율을 확인하고 해당 비율만큼 원천 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퇴직금을 입금했던 IRP 또는 연금저축계좌로 송금해준다.



소득 원천에 따른 연금소득 세율

소득 원천	세율
① 퇴직급여	연금소득세(분리과세) 퇴직소득세율의 70%
② 연금저축·퇴직연금 근로자 납입금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	과세 제외
③ 연금저축·퇴직연금 근로자 납입금 (세액공제받은 금액)	연금소득세(조건부 분리과세) -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하 : 3.3~5.5% -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초과 : 전액 종합과세
④ ①, ②, ③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단 종신연금의 경우 80세 미만인 경우 4.4%, 80세 이상은 3.3%의 세금 부과

'연금수령한도'가 뭐죠? 한도를 넘겨서 인출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매년 연금 수령으로 인정받는 한도가 있다. 이 한도를 넘겨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소득세보다 높은 세율의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글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

A 퇴직연금이 도입되지 않은 회사에 다니던 최한도(60세) 씨는 2018년 퇴직하면서 퇴직급여로 1억 원을 받았다. 그는 이 돈을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그런데 IRP를 개설한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에 수령 한도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고, 한도를 넘겨서 연금을 인출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다.

IRP나 연금저축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인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세율을 낮춰주는 대신 매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를 두는데 이를 '연금수령한도'라고 한다. 이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면 '연금외 수령'으로 보고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큰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다. 연금수령한도는 매년 1월 1일 갱신된다.

연금수령한도를 두는 이유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다. 만약 연금수령한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이 총 1억 원의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첫째에는 9100만 원을 받아가고 그 이후 나머지 900만 원을 9년 동안 나눠 받아간다고 생각해보자. 이 사람은 일시금

인출의 효과는 누리면서 세금은 상대적으로 적게 내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연금수령한도가 생긴 것이다.

연금수령한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

$$\frac{\text{과세기간 개시일(연금 개시 신청일) 현재 평가금액}}{(11-\text{연금수령연차})} \times 120\%$$

앞서 예를 든 최 씨의 1년 차 연금수령한도는 얼마일까. 연금 개시 당시 평가금액 1억 원을 10(11-1)으로 나눈 다음 120%를 곱하면 1년 차 연금수령한도는 1200만 원이 된다. 만약 최 씨가 첫째 연금으로 1500만 원을 수령했다면 연금수령한도 내 1200만 원은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가 과세되지만, 나머지 300만 원은 연금외 수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금 연차, 수령 가능한 해부터 계산

이런 식으로 매년의 연금수령한도를 구할 수 있으며, 11년 차 이후부터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모두 연금소득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10년 동안 찾지 않다가 11년 차에 모두 찾아도 연금 수령으로 간주된다.

상황을 조금 바꿔보자. 만약 최 씨가 2018년에 연금을 바로 수령하지 않고 2년간 운용해 2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후 2020년부터 연금을 수령한다면 2020년 최 씨의 연금수령한도는 얼마가 될까.

연금수령연차는 실제 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가 아니라 최초로 연금 수령이 가능해진 시점을 1년 차로 계산한다. 퇴직한 2018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2018년이 1년 차이이며, 2020년은 3년 차가 된다. 따라서 2020년의 연금수령한도는 1800만 원(1억2000만 원/(11-3)×120%)이다.

주의할 점은 최 씨가 퇴직연금 미가입자라는 것이다. 만약 최 씨가 2013년 3월 1일 이전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2018년(6년 차)의 연금수령한도는 2400만 원(1억 원/(11-6)×120%)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 5년만 연금을 수령하면 그 이후 수령하는 돈은 전부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M*

근로자 납입금이 포함된 IRP·연금저축계좌 적립금 인출 순서와 과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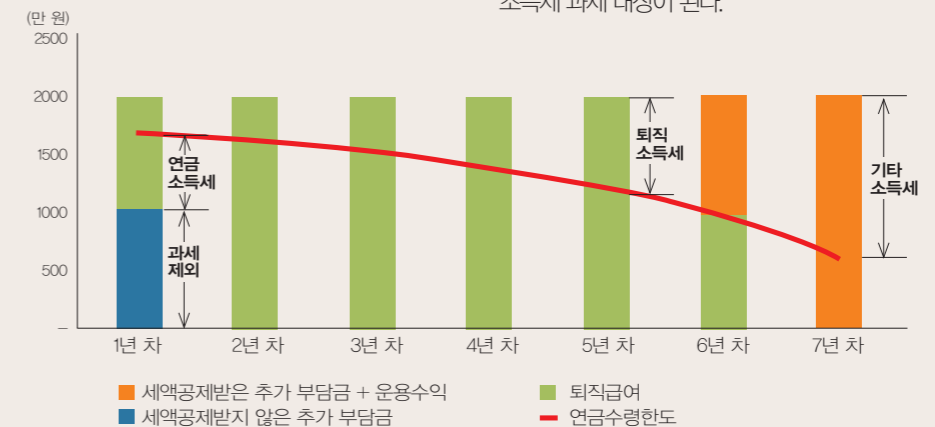
IRP·연금저축계좌에 퇴직급여뿐 아니라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수익 등이 혼재된 경우 과세 방법이 다소 복잡해진다. 이런 때는 각 적립금의 인출 순서를 따져서 계산한다. 구체적으로는 세금 부담이 적은 것부터 인출한다고 보면 된다. 근로자가 납입한 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이것부터 인출된다고 가정한다. 다음 순서는 퇴직급여이고,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받은 부담금과 운용수익 순으로 인출된다.

최한도 씨의 IRP에 퇴직급여 1억 원 외에도 세액공제받지 않은 부담금 1000만 원, 세액공제받은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합쳐서 3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연금 수령 기간에 추가적인 운용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매년 2000만 원씩 7년간 인출했다고 가정하면 최 씨의 인출금액에 대한 과세 방법은 어떻게 될까?

1년 차에는 세액공제받지 않은 부담금 1000만 원이 가장 먼저 인출된다. 이 부분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 이후

에는 퇴직급여가 인출되는데, 이때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은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가 과세되고,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2~5년 차의 인출금액은 모두 퇴직소득이다. 1년 차와 마찬가지로 연금수령한도 이내는 연금소득세, 한도 초과금액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6년 차에는 먼저 퇴직소득이 인출된다. 그러나 남은 퇴직소득이 1000만 원뿐이므로 이후에는 세액공제받은 부담금과 운용수익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

따라서 6년 차 연금수령한도(960만 원) 이내의 인출분인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으로 연금소득세가 과세되고, 한도 초과금액 중 퇴직급여 40만 원에는 퇴직소득세, 그외 인출금액 1000만 원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된다. 7년 차에는 인출되는 금액 전체가 세액공제받은 부담금과 운용수익이다.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인출액은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고, 한도 초과금액은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We Live Investment

중국, 인도, 브라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투자, 이제 세계가 무대다!

China

INDIA

Indonesia

Brazil

Vietnam

GLOBAL
INVESTOR

“글로벌 인베스터에서
생생한 글로벌 투자
소식을 만나보세요”

정기구독 : 1588-7761 | 정가 : 6,900원 | 1년(총 4회) 17,000원(약 40% 할인)

글로벌 은퇴 이야기



치매 잡으러 로봇·지자체 나섰다

미국·일본·독일 시니어들은 지금...

치매 노인 문제는 모든 국가의 고민거리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선진국일수록 고민이 깊다.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에서 그 해법을 찾고, 일본에서는 치매 노인 사고 보상에 공적자금까지 투입하기 시작했다. 치매를 잡기 위한 이들 국가의 노력과 은퇴 후 캠핑카 여행을 꿈꾸는 독일 '베스트 에이저'의 일상을 따라가봤다.



미국
인공지능 로봇,
치매 노인과 교감하며
친구·간병인 역할 착취



일본
치매 인구 2025년
730만 명 추산,
지자체까지 치매보험 확산



독일
캠핑카 45%를
50대 이상이 소유...
은퇴 후 여행 꿈꾼다

한 할아버지가 털이 복슬복슬한 아기 바다표범 '파로'를 바라보자 파로는 황소 같은 눈을 깜빡거리며 잠에서 깨더니 안아달라고 애교를 부린다. 가만히 쓰다듬으면 살포시 눈을 감고, 수염을 잡아당기면 싫다고 마구 짖는다. 화를 내면 기 싸움에 질 수 없다는 듯 대든다.

인공지능 로봇인 '파로(Paro)'가 미국 치매 노인들의 치료와 간병에 큰 도움을 주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파로는 애완동물처럼 귀여운 모습에 12개의 센서가 꼬리를 비롯한 몸 곳곳에 장착돼 사람의 목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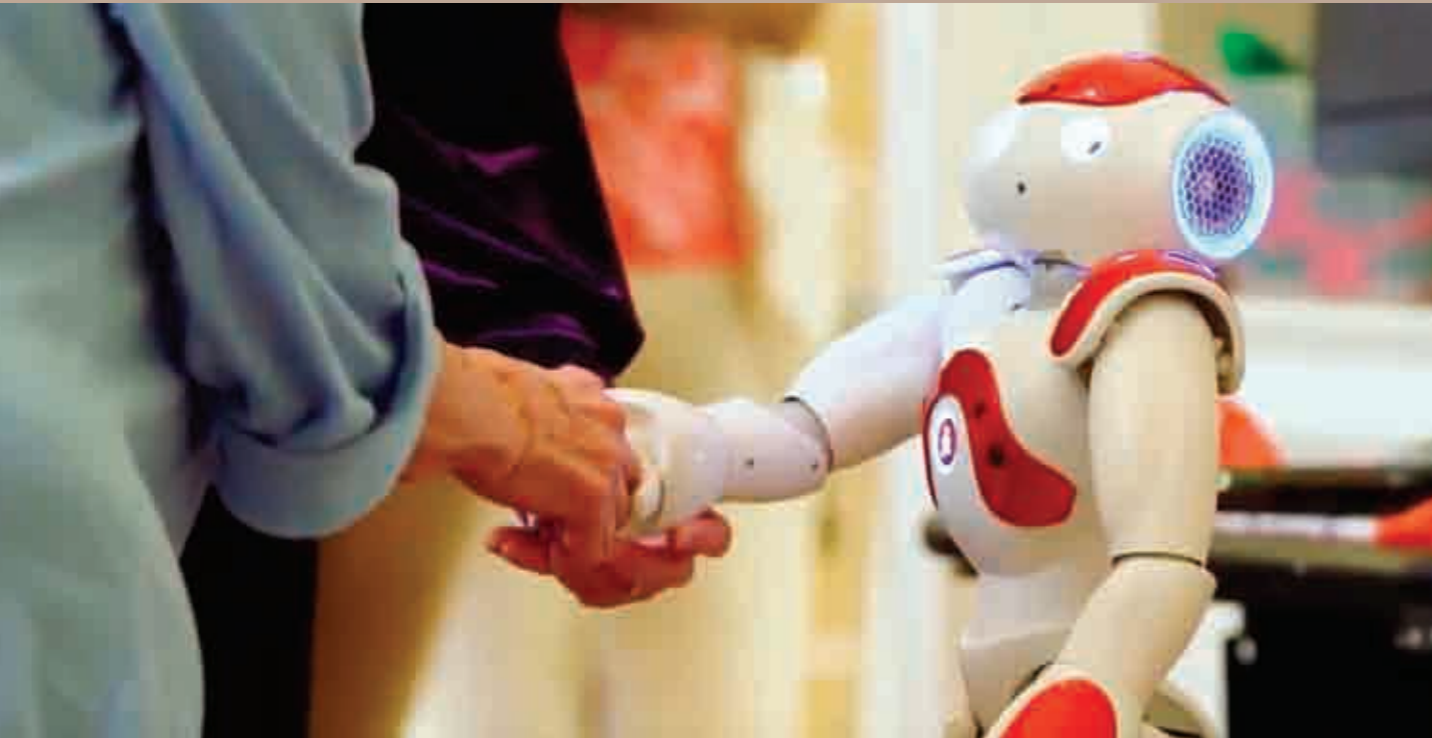


애완동물처럼 귀여운 로봇 '파로'는 노인들 사이에서 인기다.

로봇 미국 노인들의 친구가 되다

인공지능 애완동물 '파로' 치매 노인과 교감 '나오'·'페퍼', 친구·간병인 역할도 척척

글 이경원 텍사스주립대 교수



한 할머니에게 애교를 부리는 '파로'.



노인복지시설에서 한 여성 노인의 운동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로봇 '나오'.

리, 행동, 온도, 그리고 목소리에 반응한다.

일본에서 개발된 파로가 미국 식품의약청으로부터 '생체 자기제어 의료장비' 허가를 받고 미국 의료·복지시설에 도입된 것은 2009년. 이후 캘리포니아주의 한 연구팀은 파로가 치매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이어왔다.

연구팀에서 일주일에서 세 번씩 10주 동안 파로와 시간을 함께 보낸 치매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니 이전에 비해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로를 통해 가족은 물론 다른 노인들과의 관계가 향상되는 등 사회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확인됐다. 확연히 달라진 치매 노인들의 모습에 가족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3년째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평소보다 말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치매가 심해지면서 그동안 저희와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셨는데, 파로와는 눈을 마주치며 교감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치매 환자 한밤중 불안 증상 호전

파로 덕분에 미국 치매 노인 전문 요양원에서 일하는 시설 의료진과 간병인들의 업무도 훨씬 수월해졌다. 치매 환자들은 불안과 동요 증상을 자주 보인다. 이런 증상은 특히 한밤중에 자주 나타나 시설

의료진과 간병인들의 업무 피로도를 가중시킨다.

그런데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위치한 한 노인 보호시설에서 파로를 치매 노인 치료 서비스 프로그램에 도입한 이후 한밤중 치매 노인들의 불안과 동요 증상이 상당히 호전됐다고 한다. 양로원 치매 노인들도 파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파로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심신의 안정을 찾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로는 치매 노인들은 물론 그 가족과 간병인들 모두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돼주고 있는 것이다.

'나오(Nao)'와 '페퍼(Papper)' 역시 파로 못지않게 노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이 인공지능 로봇은 노인복지시설에서 입주자들에게 정서적인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간병인으로서의 역할도 든든히 해낸다.

텍사스주립대에서 개발한 두 로봇은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만한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페퍼는 키 120cm 정도의 로봇으로 큰 눈을 통해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한다. 나오는 페퍼보다 좀 작지만 매우 활동적이고 사람들과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다.

현재 텍사스주립대 엔지니어링 관련 학과와 사회복지학과, 연극영화학과 교수들이 로봇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공동 연구 중인데, 두 로봇은 연극영화학과 교수 및 학생들과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Alaris Member Health Center

인공지능 로봇은 치매 노인들에게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주거나 정서적인 도움을 주는 등 간병인의 역할을 충실히 해낸다.

함께 연기할 정도로 다양한 감정을 받아들이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 연구에 참여한 한 교수의 설명이다.

“나오와 페퍼를 위한 저희의 첫 번째 목표는 이 두 로봇의 신뢰감을 높이는 것이에요.”

신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유약한 노인들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로봇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신뢰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로봇이 사람 마음과 행동 변화시킨다니...”

나오와 페퍼, 두 로봇의 능력은 상상 이상이다. 노인복지시설에서 매일 아침 운동을 시연하고, 노인들과 심도 있는 대화도 이어나간다. 테스트를 위해 나오를 도

입한 한 시설 관계자는 노인들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시설에 들어온 이후 2년 동안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던 노인이 로봇과 20분 동안이나 긴 대화를 나눌 정도로 변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주지 못하는 무언가를 로봇이 주어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저 대단할 뿐이죠.”

두 로봇의 기능과 능력은 점점 더 향상될 전망이다. 앞으로 시설 내를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며 노인들에게 수건 등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주거나 오늘의 식사 메뉴를 알려주고, 매일 주요 신문 기사를 읽어주며 간호사들과 간병인들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두 로봇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한다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홀로 소외되고 고립된 노인들의 삶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TA

치매 환자 사고 대비 ‘치매보험’ 확산



日 치매 인구, 2025년 730만 명 추산... 지자체가 보험 들어주고 직접 배상까지

글 김웅철 매경비즈 교육총괄부장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 저자

2007년 일본의 한 지방도시에서 고령의 치매 환자가 기차선로에서 배회하다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해당 철도회사인 JR도카이(東海)는 사망한 치매 노인의 가족(부인과 장남)에게 사고에 따른 대체 수송비용 720만 엔(약 72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 소송은 치매 환자 사고의 책임에 대한 논쟁으로 일본 사회를 들끓게 했다.

재판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1심 재판부는 치매 노인의 부인과 장남에게 배상액 전부를 지불 하라며 철도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판결도 배상액을 절반으로 줄였지만 가족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치매환자가족협회는 “치매 환자를 감금해두려는 거냐”며 거세게 반발했고, 찬반의 주장은 팽팽히 맞섰

다. 약 10년에 걸친 지루한 공방이 이어진 후인 2016년, 드디어 최고재판소(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JR도카이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치매 환자와 가족 위한 보험 출시

일본 최고재판소는 1, 2심 판결을 뒤집고 치매 환자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단순히 ‘동거 가족이기 때문에’, ‘장남이니까’라는 등 단락적인 책임 추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판결의 이유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배상의 의무는 동거 유무, 친족 관계, 간호 및 간병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치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치매 환자에 대한 가족의 관리 책임을 면제해준 것은 아니었다.



판결 이후 일본에서는 오히려 치매 사고로 떠안게 될 배상 책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를 간파한 민간 보험사들은 치매 사고 배상과 관련한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다.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은 2017년 12월 보험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보상 범위를 치매 환자의 가족까지 확대 적용하는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기존 보험은 치매 환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에 한정하고, ‘자녀 또는 가족의 보호 의무 소홀’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장해주지 않았다.

치매 환자가 선로에 들어와 열차가 운행을 중단하거나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손해까지 보상해주는 상품도 등장했다.

치매 환자 증가로 관련 사고가 사회문제로 부상하자 최근 일부 지자체들은 치매 사고 배상금을 공적 자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아이치(愛知)현 오오부(大府)시는 올해 6월부터 치매 환자나 가족들을 위해 개인배상책임보험을 대신 들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1인당 연간 2000엔(약 2만 원)인 보험료를 시가 모두 부담하는데, 치매 환자는 최대 1억 엔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오오부시는 2006년 치매 환자가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난 곳이다. 사고 이후인 2009년 치매 사고 불안이 없는 지역 만들기 특별조례를 만들어 지역의 행방불명자에 대한 대책을 강화했으며, ‘따뜻한 지킴이 네트워크’를 통해 치매 예방과 무사고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후쿠오카(福岡)현 구루베(久留米)시는 오는 10월부터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치매 환자가 열차 사고, 자전거 사고, 물건 파손 등으로 제3자에게 배상해야 할 경우 최고 3억 원까지 보상해줄기로 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불안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의사가 치매를 인정한 40세 이상 주민이 그 대상이

다. 가족 등의 신청으로 시가 보험회사와 계약한다.

보험료는 1인당 연간 1490엔으로 개인이 계약하는 것보다 저렴하다. 시는 치매 환자 1000명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291만 엔의 예산을 편성했다. 구루베시는 시내에 기차역이 25개나 있어 배회하는 치매 환자 때문에 사고가 언제든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해왔다.

고베시, 치매 관련 배상금 직접 지급

민간보험을 활용하지 않고 ‘공적자금’으로 치매 관련 배상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도 있다.

고베(神戸)시는 지난 3월 치매 사고가 발생해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경우 배상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조례를 제정했다. 지자체가 공적 자금을 동원해 치매 환자의 가족을 지원해줄기로 한 것은 고베시가 처음이다. 치매 환자가 일으킨 사고의 배상 책임뿐 아니라, 치매 환자 때문에 피해를 본 주민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시는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일정 정도(1인당 400엔 정도)의 세금을 초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치매 인구는 오는 2025년 7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15년에는 520만 명이였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2014년 전국에서 발생한 철도 사고 758건 중 치매 환자 탓에 일어난 사고는 29건이었으며, 그에 따른 최대 손해배상액은 120만 엔(약 1200만 원)이었다.

치매 환자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일본에서는 치매 환자가 지게 된 배상 책임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후생노동성 측은 지난해 3월 “현 단계에서 공적 구제제도 창설은 시기상조”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다만 “민간보험을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베스트 에이지’, 꿈을 현실로 만들며 산다

獨 캠핑카 45% 50대 이상이 소유
한겨울 모로코 해변에서 수영 즐겨

글 이현희 독일 본대학 박사과정

‘루헤스탄트(Ruhestand)’. 독일에서 은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다. 직역하면 ‘정적(Ruhe)인 상태(Stand)’라는 뜻이다. 더 이상 움직이거나 일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니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이 ‘직업적 정적 상태’가 시작되는 순간, 반대로 개인의 삶은 가장 활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직장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업무에 쏟던 시간이 이제는 온전히 나 자신과 아내 그리고 가족을 위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근



매년 겨울 캠핑카를 직접 운전해 독일에서 모로코까지 긴 여행을 다니는 라인펠트 부부(맨 왼쪽)와 모로코에서 함께 수영과 자전거 하이킹 등



준비 대신 늦잠을 자거나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늘을 감상하는 여유를 즐길 수 있고, 학구열이 있는 시니어들이라면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4개월간 꿈같은 모로코 '캠핑카 여행'

그동안 어느 정도 모아둔 적금과 연금만 있다면 노후 생활에 대해 크게 걱정할 것도 없다. 체력과 열정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꿈의 실현이 가능한 50대 이상을 독일에서는 '베스트 에이지(Best Ager)'라 부른다.

모니카 라인펠트(Monika Reinfeld)와 라이너 라인펠트(Reiner Reinfeld) 부부가 은퇴 후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은 캠핑카 여행이었다. 이 부부는 올해 벌써 10년째 모로코 아가디르(Agadir) 해변 캠핑카에서 겨울을 지내고 돌아왔다.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한겨울에도 18℃를 웃도는 따뜻한 모로코로 피한(避寒) 여행을 다녀온 것이다.

이동수단과 숙소는 캠핑카이다. 독일 뒤셀도르프의 집에서 모로코 해변

까지 거리는 무려 35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9배가 넘는다. 꽤 먼 거리이지만 아무 문제 없다. 달리다 휴식이 필요하면 언제 어디서든 주차를 하고 쉬면 된다. 중간에 거쳐가는 네덜란드와 프랑스, 스페인 곳곳에 펼쳐진 명소는 덤으로 주어지는 여행지다.

목적지에는 항상 그랬듯 먼저 도착한 친구들이 이들을 부부를 기다린다. 아가디르 해변 주차장에는 이곳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독일과 프랑스 각지에서 온 캠핑카들로 가득하다. 4개월간 이곳은 주차장이자 이들의 주거 공간인 셈이다.



독일에서는 동네 곳곳에 주차돼 있는 캠핑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캠핑 생활을 즐기는 친구 부부들.



라인펠트 부부가 주차비 1320유로(한화 약 170만 원)와 주유비, 각종 생활비를 모두 합쳐 4개월간 사용한 총 비용은 3000~4000유로(380만~500만 원). 같은 기간 독일 집에서 생활했을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보다 오히려 더 적게 쓴다. 바닷가인 만큼 언제든지 해수욕과 수영을 즐길 수 있고, 친구 가족들과 작은 파티를 열 수도 있다. 따분하면 근처 다른 도시로 잠시 외유를 다녀오기도 한다.

이처럼 꿈같은 생활이 1년 중 3분의 1을 차지한다. 라인펠트 부부는 말한다.

“내년, 내후년 그리고 그다음 해에도 같은 시간 우리는 이곳에 있을 거예요.”

3월 말, 캠핑카를 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라인펠트 부부는 일부러 올 때와는 다른 노정을 택한다.

캠핑카로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다

라인펠트 부부와 같은 독일의 베스트 에이지자들은 은퇴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인생은 짧고 세상에 볼 것은 많다고 했던가. 은퇴 후 꼭 이루고 싶은 희망 목록에 '여행'은 빠지지 않는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행을 다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

뒤치다꺼리에 바쁘거나 일정에 쫓겨 여행다운 여행을 다니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인들이 선호하는 여행 중 하나가 캠핑카 여행이다. 독일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캠핑카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운전자가 대부분 백발의 고령자라는 점이 흥미롭다. 실제 2010년 통계에 의하면 독일에서 캠핑카를 소유한 사람들 중 50대 이상이 45%나 됐다. 그만큼 캠핑카가 베스트 에이지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들은 왜 안락한 호텔을 포기하고 굳이 캠핑카 여행을 떠날까? 가장 큰 이유는 기동성이다. 여행에서의 숙소 예약은 필수다. 반면 캠핑카는 내가 주차하는 곳, 쉬고 싶은 곳이 바로 숙소가 된다. 여행을 다니다 여정을 마음대로 바꿔도 무방하다.

또 어디든 갈 수 있다.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스페인 남부에서 2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면 아프리카 대륙에 도달할 수도 있다. 상상해보라. 이번 주에는 스웨덴, 다음 주에는 모로코를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한 대에 1만~1만5000유로(1억2000만~2억 원)나 하는 높은 가격은 부담이지만, 독일의 베스트 에이지들은 자신의 행복에 과감히 투자할 준비가 돼 있다. **M**

“행복 나누고 감사할 줄 알아야

올해 백수(白壽)를 맞은 철학자 김형석 교수가 자신의 행복론을 담은 새 책 <행복예습>을 펴냈다. 이 책에는 이런 문구가 써여 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은 더 큰 행복을 안겨준다.’ 천재 시인 윤동주와 한 반에서 동문수학했던 김 교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3대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직접 들어봤다.

글 이필재 인물 스토리텔러

“내가 즐겁고 사회적으로 보람을 느끼는 게 행복입니다. 인간은 사회 안에서 살기에 행복한 사회가 돼야 나도 행복합니다.”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사람은 모름지기 더 불어 살아야 행복하다”고 말했다.

“결국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는 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그랬기에 행복했습니다. 사랑을 나누세요.”

김 교수는 1920년생이다. 우리 나이로 아흔아홉, 그러니까 백수(白壽)다. 백수라고 할 때 흰 백 자를 쓰는데, 일백 백(百)에서 가로 획 한 일(一)을 빼면 99이고, 그럼 흰 백(白) 자가 돼 99세를 백수라고 한다.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태어나 윤동주 시인과 한 반에서 공부한 그는 그 시절의 윤 시인을 ‘병아리 시인’이라고 불렀다.

타고난 능력보다 큰 결실 거둬야 ‘성공’

2년 전 그가 펴낸 책 <백년을 살아보니>는 출판 불황에도 15만 권이 팔렸다. 지난해 연간 165회의 강연을 소화한 그는 필자를 만난 날도 저녁에 강연이 잡혀 있다고 했다. 한때 ‘구구팔팔이삼사(9988234)’라는 말이 회자됐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를 앓고 3일째 죽는 게 좋다는 의미로 쓰였다. 그는 그

야말로 99세까지 88하게 살고 있다. 나이 80까지는 늙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5일엔 <행복예습>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행복론을 담은 책을 냈다. 그는 이 책에 이렇게 썼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머문다. 사랑이 있는 고생은 더 큰 행복을 안겨준다.’

그는 “내가 나를 위해 하는 일은 해봤자 행복하지도 않고 남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스스로 행복하고 남에게도 행복을 나눠 주는 사람은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감사를 할 줄 알아야. 성공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성공과 행복은 동전의 양면이 아닙니다. 타고난 자신의 능력보다 더 큰 결실을 거두는 게 성공입니다. 90%의 가능성을 타고났는데 70%에 머물면 실패한 사람이죠.”

— 인생의 황금기는 60~75세라고 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행복합니다”

“60세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나를 믿어야 행복합니다. 이 시기는 또 자녀가 독립하고, 사회적으로는 정년을 맞아 직업인으로서의 삶이 끝나고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나이에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바르게 살았다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하죠.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엔 열매가 익어갑니다. 직업인으로서의 삶이 끝나 화려한 꽃은 떨어졌지만 이렇게 익은 열매가 이 사회를 위해 떨어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 지하철 경로석에서 노인들이 서로 ‘민중(주민등록증)을 깔 뺐한 사태를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노추(老醜)에 빠지지 않고 곱게 나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본에서 대학에 다닐 때 식당에서 웨이터를 했습니다. 요즘 말로 ‘알바’죠. 인격을 갖춘 손님은 학생복을 입은 알바생을 하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야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했죠. 그때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존경받는다라는 것을. 늙어서 젊은이에게서 존경을 받지 못하면 버림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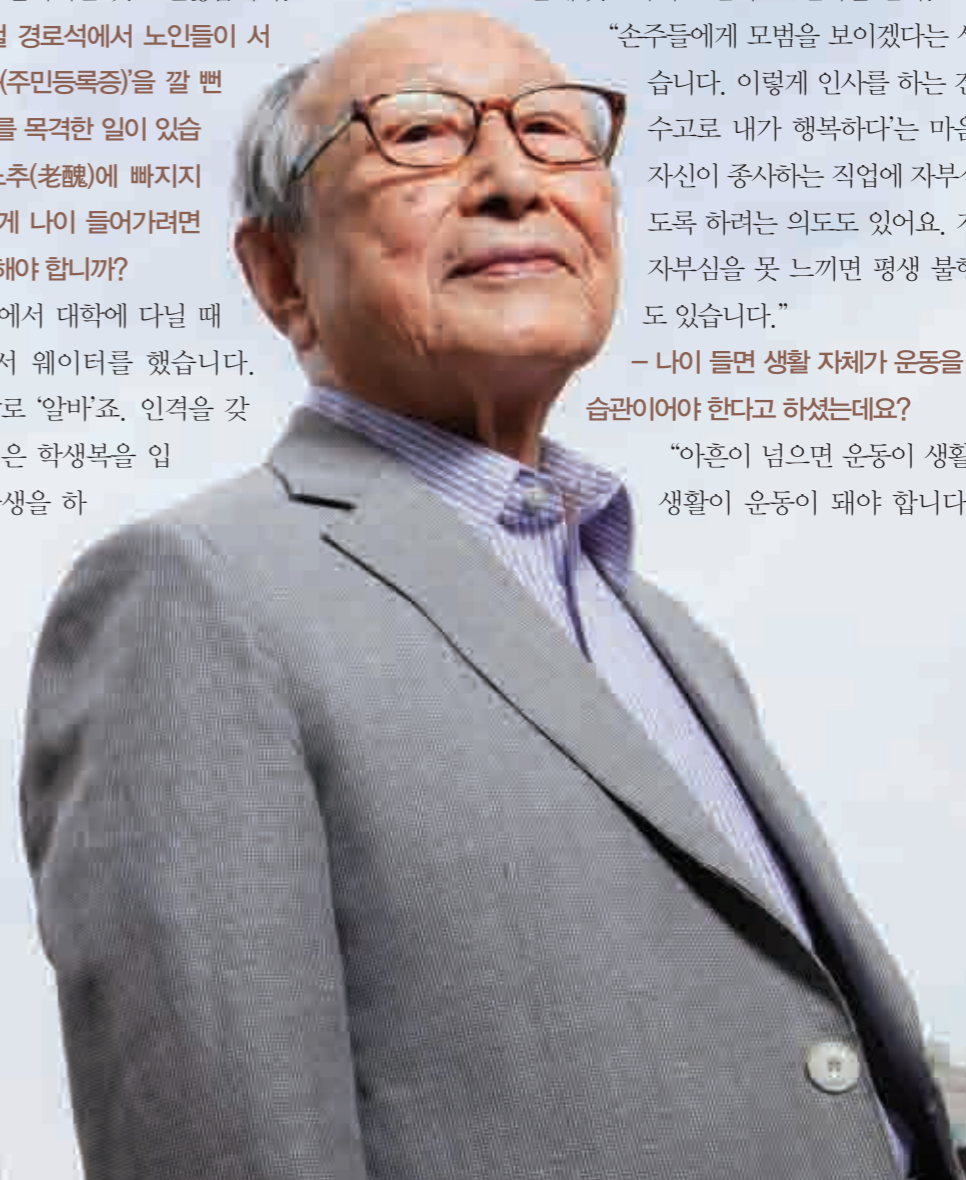
“99세까지 살 줄 알았으면 재혼했을 것”

그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기사에게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왔습니다”, “더운데 수고하시네요” 등의 감사 말을 건넨다. 아들딸과 저녁에 외식을 하다 시간이 길어지면 식당 직원에게 다가가 “우리 때문에 늦도록 수고한다”고 인사를 한다.

“손주들에게 모범을 보이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건 ‘당신의 수고로 내가 행복하다’는 마음을 전해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려는 의도도 있어요. 자기 일에 자부심을 못 느끼면 평생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 나이 들면 생활 자체가 운동을 동반하는 습관이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아흔이 넘으면 운동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운동이 돼야 합니다. 집에서



앉아만 있지 않고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식이죠. 나는 2층의 내 방을 하루에도 몇십 번 오르내립니다. 1km 정도는 걷는 게 습관이 돼 힘들지 않아요. 나 이 들면 운동이 생활 습관이 돼야 합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고혈압, 당뇨병 징후가 있더라도 40, 50대부터 잘 관리하면 80대 중반까지는 괜찮은 거 같더라고 말했다.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40, 50대부터 건강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들이예요.”

김 교수는 우리나라 철학계 1세대 교육자다. 일본 조치(上智)대 철학과를 나왔고, 연세대 철학과에서 30여 년간 후학을 양성했다. 철학의 사회적 가치는 무엇일까? 그는 “철학을 인문학으로 확장할 수 있는데 다른 학문과 달리 이른바 문·사·철을 아우르는 인문학은 일절 구속을 받지 않아 자유롭고, 그렇기에 창조력의 원천이다”라고 말했다.

“인문적 소양을 갖춰야 큰 인물이 됩니다. 미국이 강대국이 된 것도 인문적 사고를 하는 지도자들이 미국을 이끌면서 새로운 사상과 가치관을 창조해왔기 때문이죠. 철학을 공부하면 나이 오십쯤 됐을 때 나의 철학, 곧 나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80분간 인터뷰를 하는 동안 그는 여러 사람을 거명했다. 고령에도 이들의 이름을 줄소환하는 데 막힘이 없었다. 그는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살다 보면 기억력을 유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나의 문제의식이 다른 문제의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관련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고유명사를 가장 먼저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기억하는 게 동사입니다. 그래서 집 전화번호는 잊어버려도 배가 아프다는 말은 할 수 있죠.”

그는 이 나이까지 살게 될 줄 알았다면 재

혼을 했을 거라고 말했다. 김 교수의 부인 김옥수 씨는 20년 넘게 병석에 있다 15년 전 세상을 떠났다. “아내가 병중에 있을 때 어머니가 유언처럼 ‘다 떠나고 나면 결국 혼자 남을 텐데 빈집에서 혼자서 어떡하느냐’고 하셨는데 그게 재혼하라는 이야기였어요. 나이가 아흔쯤 되면 친구도 거의 없습니다.”

“건강에 자신감 생긴 건 50세 이후”

그는 여든넷에 상처한 후 아흔이 될 때까지 6년만 더 살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100세 시대라지만 80대 중반이면 대개 혼자가 됩니다. 그런 후배나 제자들에게 될 수 있으면 재혼을 하든, 연애를 하든 이성을 만나 사랑을 하면서 살라고 권합니다. 더 살

아봤자 내가 얼마나 살겠다고 하는 생각에 나는 실패했지만.”

1970~80년대 그와 함께 철학계 삼총사로 불린 안병



욱 송실대 교수, 김태길 서울대 교수는 아흔을 전후해 세상을 떠났다. 세 사람은 공교롭게도 동갑이다.

“나 혼자 남아 지금도 일을 하고 있죠. 두 사람은 나보다 건강이 좋았어요. 안 선생이 생전에 나더러 ‘김 선생은 정신력이 강해 우리보다 오래 살고 일을 많이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신력이란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이야기한 거죠.”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건강이 안 좋았다고 한다. 그의 건강 문제는 부모의 걱정거리였다. 더욱이 가정 형편도 안 좋았다. 하루는 아버지가 친구인 의사에게 그를 데려갔다. 의사는 그가 몸이 약해서 중학교에 못 간다고 말했다. 절없는 나이였지만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매달렸다.

‘중학교에 가게 해주시면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기도했다. 그가 건강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50세가 넘어서였다고 말했다.

“50대 후반에 수영을 시작해 지금도 지속적으로 합니다. 수영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건강을 유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수영은 관절에 좋고 전신운동이라 몸의 균형을 잡아주죠. 수영 덕에 아직 관절에 문제가 없어 지팡이를 짚지 않는데 내년엔 짚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자녀를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아들 둘이 다 외국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결혼시키고 2년씩 같이 살았습니다. 결혼했다고 바로 분가시키면 정이 없는 거 같고, 그렇다고 오래 데리고 있으면 고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등 어려워집니다. 2년씩만 같이 살았기에 자식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는 먼저 간 두 친구 안병욱·김태길 교수가 도산(안창호)이나 인촌(김성수) 선생보다 못하지 않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강연을 다니다 보면 ‘안병욱 선생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나한테 해요. 그렇게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겨레와 나라 걱정한 두 사람 잠들다’

그는 80세가 돼서야 1년 정도 일을 쉬었다. 막상 쉬어보니 노는 게 더 힘들더라고 했다.

—‘버킷 리스트’가 됩니까?

“지금 하는 집필과 강연을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수고와 봉사를 하다 오래 앓지 않고 가고 싶어요.”

그가, 아흔을 넘기면 신체적으로는 피곤하다고 말했다. 하루하루를 환자처럼 살아간다고 했다.

“시력과 청력이 감퇴하고 균형감각도 떨어집니다. 피곤함을 일로 극복하는 거죠.”

그에게 묘비명을 어떻게 새기고 싶은지 물었다.

“안병욱 선생이 강원도 양구에 누워 있습니다. 나도 나중에 거기로 갈 거고요. 우리 둘을 위한 묘비를 내가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묘비엔 ‘여기 겨레와 나라를 항상 걱정한 두 사람이 잠들다. 이름은 잊어지더라도 이들의 마음은 남을 것이다’라고 쓰고.”

인터뷰를 마치고 함께 카페를 나섰다. 41년 전 대학 신입생 때 나는 그의 철학 강의를 들었다. 내 리막길을 걸어 횡단보도에 이르렀다. 녹색 신호등의 숫자가 빨간색으로 바뀌기까지 20초가 채 남지 않았다고 알려줬다. 그를 따라 길을 건너는데 걸음 속도가 젊은 사람 못지않다. “집에서 2층에 있는 방으로 오르는 계단을 하루에도 몇십 번씩 오르내린다”고 한 그의 말이 생각났다. 돌아서서 가는 노 교수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으로 배웅했다. **M**



가시

명문가로부터 배우는 '자녀 리스크 관리' 노하우 재물은 10년 재산 지혜는 100년 재산

세계 최고의 부자 워런 버핏은 2014년형 중형 캐딜락을 타고 1958년 구입한 2층짜리 오래된 집에서 산다.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건 '검소함'뿐이다. 9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석주 이상룡 선생의 집안은 500년간 문집을 내는 전통을 이어온다. 위대한 유산은 재산이 아닌 삶의 가치와 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문의 자녀 관리 비법.

글 최효찬 <현대 명문가의 자녀교육> 저자, 문학박사

“발자크는 엄청난 재산 뒤에는 언제나 범죄가 있게 마련이라고 말했죠.”

워런 버핏은 오노레 드 발자크의 소설 '고리오 영감'에 나오는 이 문장을 들려주면서 전기 작가 엘리 스 슈뢰더에게 자신의 자서전을 부탁한다. 버핏이 '고리오 영감'의 문장을 언급한 것은 이 소설이 전하는 돈의 도구성 때문일 것이다. 잠시 소설 속으로

들어가보자.

소설 '고리오 영감'은 황금만능의 사회상과 상속에 대한 통렬한 풍자로 유명하다. 제면업자인 고리오의 요즘에 비유하면 '딸 바보'다. 그에게는 아나스타지와 텔핀이라는 두 딸이 있다. 그의 유일한 행복은 딸들의 기분을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내 인생, 바로 내 인생은 내 두 딸에게 달려 있

소. 그 애들이 행복하다면, 내 새끼들이 우아하게 옷을 입는다면, 그 애들이 용단 위를 걸어 다니기만 한다면, 내가 무슨 옷을 입건 내가 누운 곳이 어디 이건 무슨 상관이 있겠소? 그 애들이 따뜻하면 나는 춥지 않소. 그 애들이 웃으면 나는 결코 슬프지 않소. 그 애들이 슬퍼할 때에만 나는 슬프다오.”

고리오의 오늘날 회자되는 '딸 바보'의 전형을 보여준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더라도 딸들이 원하면 이 아버지는 서둘러서 그 소망을 충족시켜줬다. 그는 그 선물의 대가로 단지 딸들을 한번 껴안아보는 것으로 족했다.

버핏의 영웅은 '검소한' 아버지

“소문에 따르면, 아버지 중의 아버지인 이 훌륭한 아버지는 딸자식들을 잘 결혼시켜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각각 50, 60만 프랑씩 주었고 자기는 일 년에 8000 내지 1만 프랑의 연금만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딸들이 항상 딸인 줄 믿고 두 살림을 차리고 두 집을 마련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아껴줄 줄 믿고서 말이에요. 2년도 안 돼서 사위들은 마치 천한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를 자기들 사회에서 쫓아냈대요.”

귀족과 부자와 결혼한 두 딸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게 되고 결국 고리오는 스스로 떠난다. 자기가 사위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딸들은 떠나는 아버지를 말리지 않았다. 발자크는 이 대목에서 “범죄에 아버지와 자식들이 공모한 셈”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공모'는 불행하게도 이 소설이 발표된 지 180여 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이기도 하다.

버핏가(家)는 직조공 출신의 선조(先祖)가 종교 박해를 피해 프랑스에서 뉴욕으로 이민 온 지 300년 만에 세계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올랐다. 그 원동력



워런 버핏의 아버지 하워드 버핏. 공화당 하원의원을 지냈다.

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철칙, 바로 '검소함'이었다. 버핏은 14살 때 신문 배달을 시작해 부모에게서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로부터 이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다. 버핏은 “내 삶의 가치를 키워준 첫 번째

영웅은 나의 아버지였다”고 말한다.

주식 중개인을 하다 공화당 하원의원이 된 부친 하워드 버핏은 의원 월급이 1만 달러에서 1만2500달러로 인상되자 인상분을 모두 반납했다. 대공황 시기에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없다는 신념에서다. 하워드는 재산 대부분을 상속하지 않고 인구 억제와 핵 갈등 회피 문제를 다루는 기구에 기금으로 냈다.

그의 아들 워런 버핏은 세계 최고의 부자임에도 2014년형 중형 캐딜락을 타고 1958년 구입한 2층짜리 오래된 집에서 산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답게 버핏은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며 전 재산(85조 원)의 대부분을 기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버핏 가문은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유산을 지녔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주변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사업자금을 대주다 부모의 삶도, 자녀의 삶도 파국으로 이어진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고리오 영감'에서처럼 소설에서도 그렇거니와 현실에서도 부모의 돈을 물려받은 자식치고 제대로 인생을 산 이들이 얼마나 될까? 일찍이 다산 정약용은 지방관으로 근무할 때 토지대장을 열람해본 적이 있는데 2대를 넘긴 경우는 거의

버핏家の 비결 3

1. 자녀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어라

워런 버핏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아버지를 꼽는다. 그가 '검소한 부자'의 대명사가 된 것은 바로 검소하고 강직한 아버지를 본받았기 때문이다.

2. 독서를 게을리하지 마라.

워런 버핏은 10대부터 지금까지 70년 넘게 신문과 잡지, 소설 등을 손에서 놓지 않고 늘 독서를 즐긴다. 부자로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까닭은 독서를 통해 욕망을 경계하고 성찰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3. 오만함에 빠지지 말고 초심을 잃지 마라

세계 최고의 부자로 꼽히는 워런 버핏은 아직도 60년 넘은 낡은 집에서 살면서 햄버거를 즐겨 먹고 낡은 중형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

석주家の 비결 3

1. 교육에 소홀히 하지 마라

석주가는 어머니든 자녀든 모두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는 임신 중에 책을 읽었고, 자녀들은 교육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유언에 따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부를 지속했다.

2. 문화적 전통을 만들어라

17대에 걸쳐 500여 년 동안 대대로 서첩과 문집을 내는 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학행을 중시하는 자녀교육의 전통 때문이다.

3. 자긍심이라는 고귀한 유산을 물려주어라

개인적인 손익을 따지지 않고 나라를 위해 분연히 일어서는 호연지기의 정신이 오늘날 그 후손들이 다시 일어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없었다며 재물은 뜬구름 같은 것이라고 자녀들에게 말했다.

우리나라 기업인 등 자산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자식에게 유산을 상속(증여)하는 문제라고 한다. 이런 경우라면 버핏이 왜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기부를 하려는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사정으로 자녀에게 사업자금을 대주고 있다면 버핏의 자서전 격인 '스노볼'이나 '고리오 영감'을 일독해보고 결정하길 권한다.

독립운동 와중에도 며느리 교육

경북 안동에는 있는 '임청각'(1519년 건립)은 내년이면 지어진 지 500년이나 되는 고택(古宅)이다. 이곳은 오래된 내력만큼이나 많은 사연이 깃들여 있다. 특히 상해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石洲) 이상룡(1858~1932) 등 무려 9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다.

경술국치(庚戌國恥)를 당한 1911년 겨울, 54세의 석주는 50명에 이르는 전 가족을 이끌고 만주로 가 신흥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일제는 임청각을 헐어 중앙선 철도를 놓고 항일정신을 말살하려고 했다.

필자는 석주 가문의 내력을 취재하다 깜짝 놀란 적이 있다. 그 이유는 99칸이었던 임청각의 규모나 3대에 걸친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배출이 아니었다. 석주 가문이 안동에 정착한 이후 500년 동안 과거 시험에 합격해 벼슬길에 나아간 이는 병조정랑(국방부의 5급 사무관급)을 지낸 이후영(1684년 합격) 단 한 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후손 중에는 도산서원 전 교편만 아니라 안동에서만큼은 명예롭게 여긴 유향좌수(지방 풍속 단속과 향리 규찰 등을 주 임무로 하는 유향소의 장)가 있었다. 서애 류성룡도 유향좌수에 천거되자 영의정이 된 것보다 더 기뻐했다는 일화가 있다. 유향좌수는 다른 지방에서는 악폐를 저지르는 등 원성을 사곤 했지만, 안동에서는 선비



항일정신을 말살하려는 일제에 의해 집 한가운데로 철길이 놓인 경북 안동 '임청각'(왼쪽) 전경과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



들 사이에서 선망하는 자리였다.

필자가 한 번 더 놀란 것은 석주가에서는 대대로 필첩이나 서첩, 문집을 내는 전통을 이어왔다는 사실이다. "임청각은 임향조 이래 1500년대부터 20대에 걸쳐 모두 필첩이나 서첩을 내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 가문의 문화적 자부심"이라는 게 석주의 손자인 범중 씨의 이야기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유산의 힘

석주 집안의 유명한 일화 한 토막. 석주의 큰아들 준형(1942년 자결)은 간도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와중에도 며느리(범중의 어머니)를 직접 가르쳤다. 출산 후 몸조리를 할 때를 이용해 <논어>, <맹자> 등에서 며느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을 뽑아 맞춤형 교육을 시킨 것이다. 범중은 중학교를 마치고 진학을 못 해 1년 동안 농사를 지을 때 어머니에게 <맹자>를 배웠고, 그 덕분에 어려운 형편을 이겨내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집안 대대로 서첩과 문집을 내는 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교육을 중시하는 전통 덕분이었다. 석주 집안의 위대한 유산은 가문의 전통이 키워낸 자긍심이며, 바로 여기에서 항일운동의 호연지기 정신이 잉태했던 것이다. 임청각은 여성에

게도 배움의 기회를 준 공간이었고, 또 국난에 처했을 때는 나라를 구하고자 밤새 번민하던 곳이었다.

버핏의 60년 된 낡은 2층집만큼이나 집 마당의 한가운데로 철길이 놓인 임청각이야말로 '도덕적 선함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집'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선재후명(先財後名)'이라는 말이 있다. 재물이 있고서야 명성도 따른다는 말이다. 그런데 명문가는 재물이 필수적이지만 결코 재물로만 유지되지 않는다.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유산의 힘이 반드시 작동한다.

석주가 대대로 내려오는 문화적 자긍심이 최고의 명문가를 만들었다면, 버핏가는 대대로 내려오는 검소한 생활 방식이 세계 최고의 부자를 낳았다. 이들 가문을 보면 "후손에게 재물을 남기면 십 년의 재산이 되는 반면, 지혜를 가르치면 백 년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과 같다"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

아무리 잘 지은 대궐 같은 집도, 그곳에 무엇이 깃드느냐에 따라 악취를 풍기는 집이 될 수도 있고, 선한 향기를 발산하는 집이 될 수도 있다. 어쩌면 진정으로 한 나라의 부강함은 도덕적으로 선한 아름다운 집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닐까. M

고관절 골절 의료비 '실손·특약'으로 막아라

고령자 골절 환자, 10명 중 2~3명 1년 내 사망... 폐렴·뇌졸중 위험 커져

고관절 골절은 60대 이상 고령자에게는 치명적이다. 한번 부러지면 수술 이외에는 빠른 치료 방법이 없고, 수술 후 재활에 필요한 기간도 길다. 고관절 골절에 적절한 보험 상품과 보장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글 신성혁 미래에셋생명 교육&컨설팅팀 TM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것을 말하는 낙상(落傷). 60대 이상 고령자가 두려워하는 사고 중 하나다. 60대 이전에는 넘어질 때 대부분 손부터 짚기 때문에 손목을 다치기 쉽지만, 60대 이후에는 재빨리 손을 짚지 못해 엉덩이부터 부딪혀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고관절이란 골반골과 대퇴골이 만나는 부위로, 엉덩이뼈와 다리뼈가 이어지는 지점이다. 엉덩관절 또는 엉덩이관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바로 이 부분이 외부 충격에 의해 부러지는 것을 고관절 골절이라고 말한다.

고관절 골절은 발생한 위치에 따라 대퇴골 경



고령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의 가장 큰 원인은 골다공증이다. 뼈의 칼슘 성분이 줄고 밀도가 떨어지면서 뼈가 약해져 쉽게 부러지는 골다공증은 고령자와 폐경기 여성에게 많이 나타난다.

부 골절과 대퇴골 대전자 골절로 나뉜다. 대퇴골 두 아래에 있는 대퇴골 경부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상태를 대퇴골 경부 골절, 대퇴골의 큰 돌기 부분인 대전자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상태를 대퇴골 대전자 골절이라고 한다.

골절 환자 연간 의료비, 일반 성인 8배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환자는 대퇴부와 사타구니 부분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낌과 동시에 움직일 수 없고, 허벅지 안쪽으로 내부 출혈이 일어난다. 고관절 골절 환자는 대부분 고령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17년 고관절 골절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는 총 2만3938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50대 이상이 2만3491명으로 98.1%를 차지했다.

고령자에게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17~33%(10명 중 2~3명)가 1년 이내에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장기간 몸을 움직일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면역력이 떨어져 폐렴, 뇌졸중 같은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큰 수술을 받아야 함은 물

론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오랫동안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가족들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한골대사학회가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을 당한 50세 이상 환자의 1인당 연간 의료비는 919만 원으로, 일반 성인 연평균 의료비의 8배에 달한다. 하지만 이 비용도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급여 항목 통계만으로 산출한 것이다.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 상급 병실료 차액 등을 더하면 전체 비용은 훨씬 커진다. 이 중 68% 정도가 입원비라는 사실은 고관절 골절이 얼마나 오랫동안 치료가 필요한 큰 사고인지를 깨닫게 한다. 퇴원 후 장기간 재활에 필요한 비용도 부담스럽다.

고관절 골절로 입원한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냉장고 문을 열다가 넘어진 사람, 화장실에서 미끄러진 사람, 도로 턱에 걸려 넘어진 사람 등 매우 다양하다. 원하지 않는 고관절 골절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비용 걱정 없이 장기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험에 가입해둬야 한다.

고관절 골절을 보험으로 보장받기 위한 방법은



나이가 들수록 칼슘과 비타민D 섭취로 골다공증을 막고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 주변 환경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려 노력해야 한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서 고관절 골절과 관련된 특약을 추가하는 방법과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다.

실손 보험, 의료비 80~90% 돌려받아

고관절 골절과 관련된 특약에는 크게 진단 특약, 수술 특약, 입원 특약이 있다. 재해골절 진단 특약 및 5대 재해골절 진단 특약 등은 사고로 골절을 당한 경우 가입 당시 약정한 진단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1~5종 수술 특약, 재해 수술 특약 등은 골절로 수술을 받는 경우 정해진 수술 보험금을 받는다. 입원 특약, 재해 입원 특약, 첫날부터 입원 특약, 첫날부터 재해 입원 특약 등은 입원한 기간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입원 보험금을 받는다.

보험 상품에 따라서는 최초 가입할 때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중도에 필요한 특약을 추가할 수 있으

므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골절 관련 특약이 없다면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는 게 좋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아프거나 다쳐서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 조건에 따라 실제 지출한 의료비의 80~9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따라서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하게 될 경우 실제 발생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고관절 골절 발생 위험은 높아진다. 칼슘과 비타민D 섭취로 골다공증을 막고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주변 환경 및 생활습관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그리고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돈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행은 없도록 보험 하나쯤은 꼭 가입해두길 바란다. 유보무환(有保無患), 잘 들어놓은 보험이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다. *M*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수익률을 알게 된 순간, 추천해준 사람의 안목에 감동할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역시!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은 장기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가입 전 수익률을 꼭 확인하세요.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 미래에셋생명 홈페이지에서 영상광고도 확인하세요
life.miraeasset.com

■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최저보증하는 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변액보험은 특별계정의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거의 특별계정 운용실적(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해외형 특별계정의 경우 환율변동 시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1475호

OLD

글:그림 - 홍승우

2화, 시력과 청력 그리고 추리력.

1 아버지는 시력이 거의 없으시다.

한걸음 그냥 패션

그러다 보니 걷는 모습이 종종걸음일 수밖에 없는데

넘어질까 봐 조심 조심

누나가 아버지를 위해 접이식 휠체어와 지팡이를 사가지고 왔다.

부모님은 무척 좋아하셨다.

우리 딸 밖에 없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1년이 넘도록

그 선물을 한 번도 안 쓰셨다.

팔한테는 미안하지만 되도록이면 늙어서도 자신의 의지로 걸으려고 노력해야 해.

자부심에 의존하려고 하면 안 돼.

응. 누나. 선물 잘 쓰고 계셔.

네 누나한테 전화 오면 잘 쓰고 있다고 해.

맘 상할 수도 있으니.

2 오늘 만화가들이랑 당구 쳤어요.

응.

회한하다. 귀가 어두우신 아버지는 내 목소리는 못 들으시는데

사장님이 단골이라 고맙다며 제게 개인 큐대를 주셨어요.

뭐?

만화가들이랑 당구 쳤대요.

어머니 목소리는 알아들으신다.

막내가 당구 단골이라 사장님이 개인 큐대를 공짜로 줬대요!

응.

아버지 귀는 어머니 목소리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매년 하는 수시통역은 힘들고 귀찮은 일.

당신 귀가 내 목소리 전용 귀라고요!!

그래서 나도 주파수를 어머니 톤으로 바꿨다.

요 알 마트에 가셨어요!!!

응.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 목소리도 잘 들으신다.

네 엄마 없으니 초코파이 하나 더 주라.

문제는 내 주파수가 아예 버릇이 되었다는 점.

내가 어제 당구를 쳤는데!

야. 목소리 좀 낮춰.

볼륨 조절하는 습관을 키워야겠다.



어머니에게 혈당 측정기는 거짓말탐지기였던 거다. 30

‘전직(前職)’은 과거 전쟁터에서 입었던 ‘갑옷’ ‘갑옷’ 벗어야 새로운 출발점에 선다

은퇴는 원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사건이자 계기다. 인생의 한 단계를 졸업하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전직’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어르신’이면 어쩔고 ‘할아버지’면 어쩔까. 형식적인 호칭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자신만의 가치를 찾는 게 중요하다.

글 한혜경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래전 서울 B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은퇴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던 한 후배가 겪은 일화다. 당시만 해도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고, 중산층 이상이 많이 사는 것으로 유명한 지역이었기에 그 후배는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 엄청 노력했고 준비도 많이 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경험도 많지 않았던 후배는 이런저런 걱정에 잔뜩 긴장한 상태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갑옷 입은 수강생들

두 주일쯤 지난 후 프로그램은 잘 진행됐는지,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해 물어보니 후배는 울상부터 지었다. “아유, 말도 마세요. 첫날부터 남자들은 마

치 약속이나 한 듯이 짙은 색 양복에 화려한 넥타이를 매고 오셨고, 여자들도 정장을 입고 오셔서 우리 복지

관이 완전히 환해졌다니까요.”

“그래? 그건 좋은 일 아닌가? 그분들도 준비를 많이 하셨네.”

“문제는 이분들이 통 옷지도 않고,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강의 같은 걸 들을 때도 ‘어디 한번 해보라’는 표정을 짓고요.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한결같이 ‘전직’ 높으



신 분들인 거 있죠. ‘전직 고위 공무원’, ‘전직 모기업 간부’, ‘전직 교장 선생님’ 등등... 아무튼 이분들 태도 때문에 완전 기가 질렸다니까요.”

후배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다.

“그분들, 한마디로 ‘갑옷’ 입은 장군들 같았어요.”

갑옷이라고? 재미있는 표현이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후배는 이렇게 설명했다.

“자기 자신은 절대 노출하지 않고 상대방의 정세만 살피니까요. 무슨 말을 해도 ‘글쎄, 정말 그럴까?’라고 묻는 듯 의심이 가득한 표정이고요. 전문가들이 강의를 할 때에도 ‘뭘 모르는구먼, 그건 그렇지 않아요’라는 얼굴이라니까요.”

갑옷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소위 ‘잘나가던’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갑옷을 벗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들이 갖춰 입은 정장은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교복 같은 것이고, 이들이 보인 방어적인 태도 또한 오랫동안 몸담았던 ‘경쟁’과 ‘생존’의 전쟁터에서 익히고 몸에 밴 것들일 것이다. 약한 모습을 보였다가 손해를 본 뼈아픈 경험도 모두들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봐! 나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거든! 나도 한때는 대단한 사람이었거든!!”

“할아버지라고? 나, 교수 출신이야!”

필자도 경기도 모 사회복지관에서 6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 어르신이 큰 소리로 화를 내는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젊은이 앞에서 어르신은 막무가내로 소리를 질렀다.

“할아버지라고? 나, 이래 봐도 교수 출신이야. 너 희들한테 할아버지 소리나 들을 사람이 아니라고!”

사정을 들어보니 사건의 발단은 자원봉사하러 온

대학생이 그 어르신에게 무심코 “할아버지, 이리 오세요”라고 말한 것이었다. 화가 난 어르신은 당황한 대학생이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하는데도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는 듯 계속 소리를 질러댔다. 더 황당했던 건 어르신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모인 복지관 관장 이하 직원들에게 소리친 말이다.

“앞으로 나한테 교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전직 교수님’의 한바탕 소동을 지켜보면서 이참에 은퇴자를 부르는 호칭도 재정리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은퇴한 사람들에게 ‘은퇴 직전 직위’ 혹은 그가 가졌던 직위 중 ‘가장 높은 직위’를 예의상 붙여 부른다. 예를 들면 모 기업 이사로 은퇴한 사람에겐 성 뒤에 ‘이사님’, 부장으로 은퇴한 사람에겐 ‘부장님’이라고 붙여 부른다. 한 번이라도 사장 자리에 올랐던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장님’이다.

이런 식의 호칭이 과연 바람직할까? 왜 우리는 이름 뒤에 존칭형 어미 ‘님’자만 붙여 ‘OO님’이라고 부르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최근에는 기업 내에서도 직위를 생략한 채 ‘OO님’이라고 부르는 추세인데 말이다. 또 ‘어르신’이나 ‘할아버지’ 같은 보통명사에 대해 왜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며 화까지 내는 것일까?

심리학자 모건 스콧 펙은 나이 들수록 직업과 자

아의 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늦어도 중년이 되면 직업에만 몰두하던 자아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과 자아의 분화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은퇴한 후에도 오로지 직업적 역할에만 정력을 쏟게 돼 자아가 흔들린다는 점도 경고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직업 역할과 자아를 분화하기란 생각보다 어렵다. 특히 위에서 본 은퇴자들처럼 잘나가던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사람,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을 당연시하던 사람일수록 더더욱 어려움을 느끼기 마련이다.

갑옷 벗고 나만의 가치 찾기

하지만 '갑옷 벗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입고 있었던 교복을 벗어야 하듯이, 전쟁이 끝나면 군복을 반납하고 민간인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듯이, 갑옷 또한 은퇴와 함께 '반드시' 벗어야만 하는 옷이다.

벗어야 할 옷에 미련을 둔다는 건 자신이 여전히 과거의 성취에 집착한다는 표시이며, 쓸데없는 방어 의식과 경쟁의식밖에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안팎으로 광고하는 일이다. 갑옷을 벗으면 인격도 사라진다고 믿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쩌다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 행사에 참석하면 몸이 뒤틀린다. 그날 행사의 원래 목적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 당시, 내가 그 일을 했을 때..."로 시작되는 지루한 얘기를 끝도 없이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은퇴는 원래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사건이자 계기다. 인생의 한 단계를 졸업하고 더 높은 또 하나의 단계로 올라가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입었지만 몸에 맞지도 않는 두껍고 거추장스러운 갑옷을 벗고 원래의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계기, 그래서 자연스럽게 솔직하게 나답게 살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렇다고 과거를 모두 잊으라는 건 아니다. 인생의 험난한 과정을 잘 통과했다는 자부심은 간직하는 것이 좋다. 혹시 아직도 'OO님'이나 '어르신'이라는 호칭이 낯설고 화가 난다면 이제부터라도 갑옷을 벗은 '낯선 자신'과 직면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갑옷을 벗은 후에도 빛날 수 있는 당신만의 가치를 찾으시라. 은퇴 후 행복은 '전직 OO'라는 과거의 호칭이 아니라 현재의 당신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M**



김과장! 뭘 그리 열심히 봐?
페이스북에 재미있는 거라도 있어?



아~ 제가 요즘 노후준비에 관심이 있어서
팔로우 하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무슨 내용인데?



연금이랑 투자, 건강 등등
나이 들면서 생각해봐야 할 것들요



오...나도 당장 팔로우 해야겠음

“내 손안의



노후준비”



암 투병 후 장롱·서랍 정리하는 엄마...

“너 낳고 받은 거니까 너한테 물려줘야지”

글 조민희 <별별다방으로 오세요> 저자, 작가 겸 칼럼니스트

시집간 딸은 ‘도둑’이라던가요? 저도 한때는 친정에 갈 때마다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서 들고 오기 바빴습니다. 물론 엄마가 딸 생각해서 기꺼이 내어준 것들이긴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서 자꾸 받다 보니 나중엔 받는 게 당연해지고, 은근히 바라는 마음까지 들더군요. 엄마의 애장품들 중에도 내 멋대로 미리 점찍어둔 것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말이지요.

“아나, 이거 너 해라”

하지만 그것도 엄마가 아직 건강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암이라는 무서운 손님을 치러내느라 부쩍 쇠약해진 엄마를 보면, 내 욕심 따위는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엄마가 지금 모습 그대로 백 세까지 우리 곁에 있어주기만 바랄 뿐이지요. 하지만 딸의 바람과는 달리 엄마의 마음은 나날이 약해져가는 모양입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변을 차분히 정리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이시니 말입니다.

며칠 전 엄마 집에 들렀더니, 그날도 엄마는 뭔가를 ‘정리 중’이더군요. 장롱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저 깊은 서랍 속의 옷과 상자들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고 물으니 엄마는 “전부 버릴 것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참에 엄마의 골동품을 한 가지라도 더 퇴출시키려고 옆에서 온갖 잔소리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러면 엄마는 도리어 말을 바꾸어, 버린다면 옷을 도로 장롱에 개켜 넣느라 바빴을 테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엄마가 미련 없이 던져버린 옷가지를 내가 자꾸 다시 집어 들었습니다.

“아, 이 블라우스 기억 나. 나 고3 때 엄마가 담임 선생님 만나러 올 때 입었잖아. 아직도 멀쩡하네.”

“아, 이 벨트. 이모가 선물해준... 아, 이 스카프...”

눈에 익은 물건이 손에 집힐 때마다 내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갑니다. 아닌 게 아니라 블라우스를 입고 스카프를 감은 엄마의 젊은 시절 모습이 눈에 선했던 겁니다. 반가운 마음에 수선을 피우니 엄마의 얼굴에도 아련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언제는 다 갖다 버리라고 성화터니만.”

“그러게 말이야. 오늘 보니 다 멀쩡하네.”

빈말만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도 더 된 구닥다리라고 얹잡아만 봤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

보니 아직 짱짱하고 나름 멋스럽더군요. ‘십 년만 더 기다려 내 나이 오십대엔 누가 뭐라든 보란 듯이 휘감고 나설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엄마가 예전과 다름없는 멋진 모습으로 화려한 장신구에 스카프를 휘날리며 외출하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는 복고풍 블라우스도, 물 빠진 스카프도 엄마 장롱 안에 고스란히 보관해두어야겠지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갑자기 생각난 듯, 화장대에서 뭔가를 꺼내시더니 제 무릎 앞에 툭 던지며 말씀하십니다.

눈물 없이 버릴 수 없는 추억

“아나, 이거 너 해라.”

뭔가 하고 들여다보니 엄마가 무척이나 아끼는, 판에는 명품인 손목시계입니다. 물론 올드한 스타일이지만, 엄마에게는 값을 매길 수 없이 귀한 물건이죠. 그 옛날 새색시 시절, 첫딸을 낳고 시부모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엄마에게 아버지가 사다 준 선물이 바로 그 명품 시계였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받은 유일한 선

물이라는 그 시계를 엄마는 이제 제게 내주시려는 겁니다. 엄마는 당연하다는 듯 말합니다.

“너 낳고 받은 거니까 너한테 물려줘야지.”

“물려주긴 왜 물려줘. 엄마가 손목에 차고 하늘나라 가야지.”

“그거 안 차고 가면 네 아빠가 쭈그렁이 마누라 못 알아볼까 봐?”

그렇게 말하고 엄마는 혼자 웃으며 고개를 젓더군요.

“눈 감으면 그만이지, 귀신이 어디 있나? 그리고 이거 다 내가 정리하고 가야지, 안 그러면 다 네 고생이다. 휴우~”

어느새 엄마의 웃음은 긴 한숨이 되어 잦아듭니다. 한숨 속에 적당히 묻어버린 나머지 말은 듣지 않아도 잘 압니다.



10년 전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는 유일한 혈육으로서 할머니가 사시던 집을 혼자 정리했습니다. 그 집을 가득 채우고 있던, 할머니가 평생 아끼며 써온 온갖 물건들은 엄마에겐 눈물 없이는 바라볼 수 없는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었겠죠. 그 모든 것들을 엄마는 손수 분류하고 정리하고 소각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외할머니를 간병하던 시간보다 더 괴로웠다는 엄마는 그때 굳게 결심했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이런 고역을 겪게 하지 말아야지, 너무 늦기 전에 스스로 주변을 정리해야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어느새 우리 곁에 와 있을 줄은 엄마도 나도 몰랐지요. 투병 이후 엄마는 굵은 신발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언제 다시 저런 걸 몸에 걸치랴.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하며 치렁치렁한 옷, 무거운 옷, 관리하기 힘든 옷들도 다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제법 값을 쳐주고 장만한 물건들, 귀금속은 그냥 버릴 수가 없어 새 주인을 찾기 시작했죠. 그때쯤부터 엄마는 딸과 며느리에게 수시로 하나씩 '물려주곤' 했습니다.

“아나, 이건 니가 해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이제 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서글프고 듣기 싫은 말인지도 잘 알게 됐죠. 나는 정색을 하고 엄마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건강 회복해서 예전의 멋쟁이로 돌아갈 생각을 해야지.”

내 판에는 엄마를 응원하는 말이었는데, 그 말은 오히려 엄마의 기운을 꺾어놓는 모양입니다. 씩씩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고개를 가로젓는 걸 보면요. 그래서 한동안은 애먼 물건 타박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이 누가 그런 거 차고 다녀. 그냥 엄마가 백 살까지 차.”

그러나 그 말도 엄마한테는 서운하게만 들리는 모양입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떤 말로 이런 순간들을 모면해야 할까요?

“흐음, 어디 보자...”

나는 엄마가 건네준 손목시계를 새삼 자세히 들여다보는 척했습니다.

“늑대들처럼 다 물어갈 거야”

“씩어도 준치라고, 물건은 아직 쓸 만하네. 이거 정말 며느리 안 주고 나 줄 거야?”

엄마는 기분이 좋은지 입을 삐죽 하며 핏 하고 웃습니다.

“그런데 엄마. 이거 당분간 여기다 보관해둬. 때 되면 내가 알아서 냉큼 챙겨갈 테니까.”

“뭐하러. 그냥 오늘 가져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려면 고생해.”

“엄마는 혼자였지만 우린 셋이잖아. 늑대들처럼 달려들어서 눈 깜짝할 새 다 물어갈 거야. 서로 싸움이나 안 나게, 엄마가 미리 입자나 정해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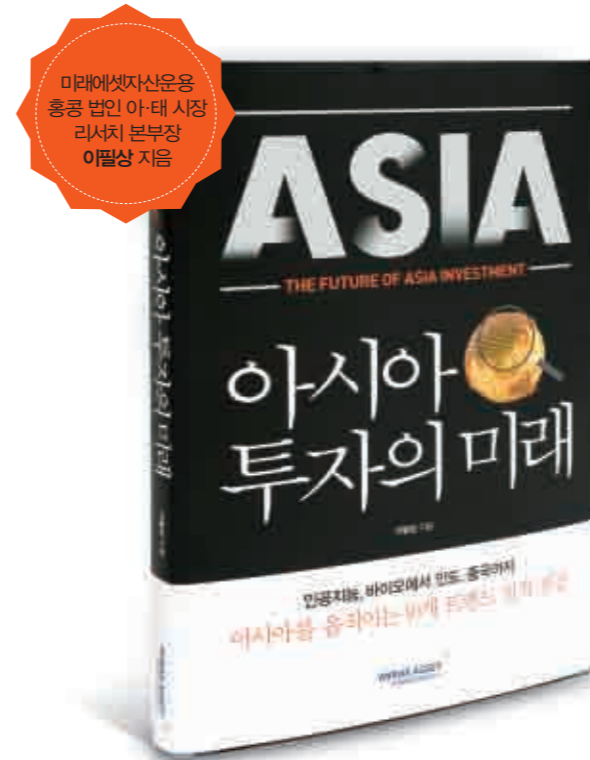
엄마는 제 마음을 이해한 것일까요? 눈을 흘기며 시계를 도로 집어넣습니다. 엄마의 화장대 오른 쪽 끝 서랍. 거기가 아마 딸인 내 자리인 모양입니다. 그 서랍에 엄마와 나의 추억이 하나하나 쌓여가는 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볼 수 있기를..., 지금 제 욕심은 그것뿐입니다. **M**

ASIA

THE FUTURE OF ASIA INVESTMENT

아시아 투자의 미래

4차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투자자를 위한 최고의 필독서!
인공지능, 바이오에서 인도, 중국까지
아시아를 움직이는 10개 트렌드 밀착 점검!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법인 아태 시장
리서치 본부장
이필상 지음

**당신은 아시아가
이끄는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책은 아시아 시장에 대한 최고의 입문서다.
-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아시아 최전선에서 건져 올린
생생한 투자 트렌드를 만나다!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예민한 거보다 둔감한 게 더 좋다

이 책은 '실락원'이라는 연애소설로 유명한 일본의 소설가 와타나베 준이치가 쓴 또 하나의 베스트셀러다. 2007년 일본에서 출간된 이 책은 100만 부 넘게 팔렸고, 원제인 '둔감력'은 그해의 유행어로 선정되는 등 화제를 모았다.

글 박덕진 (글로벌 인베스터) 편집장

책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성격이 예민하면 오히려 좋지 않으니 적당히 둔감하게 사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둔감력을 기르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책이 왜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 쉽게 짐작이 간다. 대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둔감하다'는 말을 역으로 뒤집어 해석하면서 둔감한 성격이 가진 긍정적인 장점을 그럴듯하게 부각하고 예민한 성격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을 신랄하게 공격했기 때문이다.

늘 둔하다고 핀잔만 듣던 '둔감한' 독자가 보기에 는 이만큼 사이드 같은 소리가 없다. 세상에는 샤프하고 날카로운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주 희미한 징후만 보여도 죽집게처럼 본질을 짚어내고, 아무리 감추려 해도 귀신처럼 약점을 간파하고 달려드는 예리한 인간들에게 늘 털리기만 하던 둔재들에게 지은이의 주장은 정서적 자양강장제나 다름없다. 역시 많이 팔리는 책에는 다 이유가 있다.

지은이는 자신의 경험담을 살살이 뒤져가며 둔감력 부족으로 생기는 불상사를 하나하나 보여준다.

지은이의 지인 중에 앞날이 기대되던 소설가가

있었다. 지은이가 보기에는 글 쓰는 재주는 출중해 보였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출판사 편집자에게 원고를 한번 거절당하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쉽게 헤어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었다. 자존심 강한 신인 예술가가 예민한 거야 으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는 유독 정도가 심했던 모양이다. 결국 그는 그 뛰어난 재주를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문단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가 편집자의 반응에 쉽게 좌우되지 않을 만큼 둔감했다면 결과는 달랐으리라는 것이 지은이의 생각이다.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둔감하다?

소설가가 되기 전 외과 의사였던 지은이가 병원에서 만난 한 선배에 대한 이야기도 재미있다. 지은이가 있던 병원에는 실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수술실에서 잔소리가 너무 심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다. 수술하는 내내 그의 잔소리와 꾸중을 견뎌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런 잔소리를 가장 많이 들어야 했던 한 선배는 그 상황을 나름대로 헤쳐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선생님이 잔소리를 할 때마다 “네,

네” 하고 대답하면서 흘려버리는 것이었다. 야단을 맞아도 주눅 들지도 않고, 수술이 끝나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목욕을 하고, 다시 환히 웃으며 일상으로 돌아갔던 그 선배는 후에 그 잔소리 선생님의 뒤를 잇는 실력과 의사가 되는 것으로 둔감과의 귀감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지은이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둔감력이 뛰어나다고 주장한다. 여자가 겉으로는 연약하고 예민해 보이지만 실

제로는 남자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다. 가벼운 상처에도 비명을 지르는 여자가 출산과 같은 엄청난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것은 자식을 낳아야 하고, 또 그 자식을 돌보는 엄마의 역할을 몸에 새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가진 혈액의 절반을 출혈로 잃어버렸음에도 생명을 잃지 않은 여자 환자를 본 기억을 이야기 하며 남자는 대개 3분의 1만 혈액을 잃어도 사망하지만 여자는 더 많은 양의 출혈도 견뎌내는 예가 많은데 이것 또한 여자의 둔감력이 뛰어난 예의 하나라는 게 지은이의 주장이다.

'둔감력'보다 중요한 건 '상황 파악'

이 책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수십 가지 나열돼 있다. 대개 지은이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인 만큼 설득력이 있고, 공감이 간다. 에세이로 가볍게 쓴 글이라 무슨 과학적 근거를 기대할 것은 아니고, 이런 저런 사례를 보며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 재료로 쓰기에 딱이다.

다만 둔감력을 기르자는 충고를 액면 그대로의 실행지침으로 삼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 예민



와타나베 준이치 지음 / 다산북스 펴냄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의 성격을 마치 컴퓨터 제어판에서 설정을 조정하듯 바꿀 수는 없지 않은가. 예민한 사람은 예민한 대로 살길을 찾아야지 억지로 둔감해지고자 한다 해서 쉽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

또 한 가지, 둔감력이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사태의 일면일 뿐이다. 지은이가 백방

으로 예를 드는 것처럼 둔감력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민력이 필요한 상황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둔감력과 예민력은 상황에 맞게 활용해야 하는 것이지 어느 하나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예민해야 할 때는 예민해야 하고, 둔감해야 할 때는 둔감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둔감해야 할 때 예민하게 굴고, 예민해야 할 때 둔감해져버린다. 타이밍을 잘 못 맞추는 이 인간적인 고질병은 그저 예민력과 둔감력을 연마한다고 해서 고쳐질 리 만무하다. 요컨대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 파악이요, 예민력이나 둔감력은 그다음일 것이다.

어쨌거나 둔하다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면을 알려주고, 다시 생각하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나름 책을 읽은 소득이 있다. 예리하다거나 예민하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멋있다는 느낌이 많이 희미해지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큰 소득은 앞으로 엄청 샤프하고 예리한 인간 앞에 가서도 기죽지 않고, 이분도 나름 힘든 일이 많겠다는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아닐까 싶다. M



Vol. 06

발행일 2018년 9월 14일 발행처 (주)동아이앤디 발행인 김수곤
편집디렉터 엄상현 아트디렉터 주영권, 윤상석 교열 배영조 이미지 동아DB, shutterstock
주소 (03187)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1 동아미디어센터 인쇄 (주)중앙문화인쇄
가격 5000원

* 이 책에 실린 어떤 내용도 무단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기구독 안내

〈행복한 은퇴 발전소〉는 새로운 개념의 은퇴 매거진입니다.
종합적인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만한 자산 관리 방법, 건강, 라이프,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원하는 곳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구독료가 인상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종전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정기 구독료(4회) 1만9000원(택배비 포함)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02-361-1030/psj09@donga.com

계좌번호 국민은행 870-01-0149-959, 예금주 동아일보(CMS코드 77777)